
第114回서울特別市議會(臨時會) 環境水資源委員會會議錄
第4號
서울特別市議會事務處

日時 1999年7月8日(木) 午後4時
場所 環境水資源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1. 서울特別市都市公園條例中改正條例案
 2. 서울特別市水道條例改正條例案
-

審査된案件

1. 서울特別市都市公園條例中改正條例案(서울特別市長 提出)
... 2面
 2. 서울特別市水道條例改正條例案(서울特別市長 提出) ... 4面
-

(16時 27分 開議)

○委員長 金鍾來;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特別市議會 제114회 臨時會 제4차
環境水資源委員會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議事棒 3打)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일정은 당초 양재시민의 숲 현장시찰을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그 동안 심사 보류되어 온 環境管理室 所管 서울特別市都市公園條例中改正條例案과 上水道事業本部 所管 水道條例改正條例案에 대하여 금번 회기중 심사 처리하고자 부

특이 오늘로 일정을 잡게 되었음을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3일간 오전 10시부터 추가경정예산 심사에 따른 豫算決算特別委員會 회의가 열리고 있음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옆에 우리 위원님 다섯 분이 자리가 빈 것 같습니다.

1. 서울特別市都市公園條例中改正條例案(서울特別市長 提出)
(16時 28分)

○委員長 金鍾來;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特別市都市公園條例中改正條例案을 상정합니다.

(議事棒 3打)

본 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지난 제113회 임시회 회기중 상정되어 좀더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심사 보류되었던 안건으로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고 질의답변시간을 가졌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본 안건에 대한 혹시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질의답변을 갖고 그렇지 않으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그래서 지금 본회의 들어가기 전에 간담회를 우리 위원님들이 같이 가졌습니다. 그래서 일부 전에 제113회 임시회 때 이 부분에서 수정할 부분이 있다 해서 수정동의안을 내기로 했습니다. 의견을 모은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金在實委員께서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在實 委員; 金在實 委員입니다.

그간 간담회를 통하여서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 일치를 보았습니다.

개정조례안 "제7조제2항을 삭제한다"를 제7조제1항 "공원관리청이 공원시설의 관리를 공원관리청이 아닌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위탁료는 원칙적으로 감정가격, 또는 원가계산 용역 등의 방법으로 산정하여 징수하며, 일반경쟁에 의하여 위탁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그 낙찰금액을 위탁료로 하여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관리위탁료를 면제하거나 전기, 수도 등 공공요금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와 같이 하고, "같은조제2항을 삭제한다"로 하며, "별표1 내지 별표3 및 별표6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하고 별표5는 이를 삭제한다"를 "별표1, 별표2 및 별표6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하고 별표3 및 별표5는 이를 삭제한다"로 수정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委員長 金鍾來; 金在實 委員께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金在實 委員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委員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金在實委員의 수정동의를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議事棒 3打)

金在實 委員이 본 개정조례안에 제안한 수정동의와 같이 수정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의의가 없으므로 서울特別市都市公園條例中改正條例案은 金在實 委員의 수정동의와 같이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議事棒 3打)

.....
(參照)

서울特別市都市公園條例中改正條例案

(뒤에 실음)
.....

○委員長 金鍾來;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議事棒 3打)

(16時 32分 會議中止)

(16時 44分 繼續開議)

○委員長 金鍾來;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議事棒 3打)

2. 서울特別市水道條例改正條例案(서울特別市長 提出)

○委員長 金鍾來;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特別市水道條例改正條例案을 상정합니다.

(議事棒 3打)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안에 대해 전문개정 안건으로서 심도 있는 검토와 심사를 요하는 안건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면 上水道事業本部長 나오셔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次長 金弘石; 上水道事業本部 次長 金弘石입니다.

본부장님께서 예산결산위원회에 참석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대신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特別市水道條例改正條例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金鍾來 委員長님, 그리고 環境水資源委員會 위원 여러분, 그 동안 상수도 행정에 대하여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상수도 행정이 날로 발전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많은 조언과 충고를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서울特別市水道條例改正條例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 수도조례는 79년 4월 30일 전문개정된 후 요금조정이나 제도개선이 필요할 때마다 부분적으로 개정하여 운용해 왔는바, 금번에 급수와 관련된 대 시민 규제사항을 개선하고, 상수도행정 여건의 변동에 따라 관련 규정을 마련하면서 일부 운용상 불합리한 조항을 정비하는 등 전면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조례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서는 첫째, 직결급수체계 도입과 수도조례 해석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직결급수와 호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고 일부 불필요한 용어의 정의를 삭제하였습니다.

둘째, 주택 등의 매매시 신 소유자에게 전 소유자가 체납한 3개월분까지의 수도요금을 승계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을 삭제하고, 검침기간 중에 소유자가 변동되는 경우에도 취득일 10일 전에 신고를 하면 수도물 사용량을 분리 계량하여 신·구소유자에게 각각 부과하도록 하여 시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체납 수도요금 승계로 인한 시민의 불만을 해소코자 하였습니다.

셋째, 소출수 지역의 민원해소를 위해 인입관 구경확대시 시민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정액공사비 및 시설분담금을 10년 이내에서 분할납부토록 함으로써 일시납부에 따른 시민의 부담을 경감토록 하였습니다.

넷째, 상수도 생산시설 등의 확충으로 급수여건이 개선되어 흡수정 및 저수조 시설, 특수가압시설 설치 필요성이 줄어들어 따라 이와 관련된 조항을 폐지하고, 배·급수관에서 직접 수용가에게 공급하는 직결급수체제로 전환하기 위해 관련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섯째, 수도계량기 구경은 시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기 설치된 수도계량기 구경을 사용량에 적합한 구경으로 변경하는 데 따른 보다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이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여섯째, 사설소화용 급수를 연습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사업소장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는 것을 신고로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하였습니다.

일곱째, 일시급수 신청시 예정사용량에 대한 수도요금을 일시에 납부토록 하였던 것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금을 납부하고 사용량에 따라 요금을 부과하도록 하여 일시급수신청 시민의 부담을 덜어 주도록 하였습니다.

여덟째, 시와 시민들간에 급수장치 관리한계를 명시하고, 급수사용자 등의 신고의무 범위를 일부 제한하는 등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였습니다.

아홉째, 신속한 누수신고 및 복구로 유수율을 제고하고, 자원의 낭비를 줄이기 위하여 누수신고를 한 주민에 대한 포

상금 지급 근거규정을 신설하였고,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열번째, 우리 시 수도기술연구소가 정부로부터 먹는물 수질 검사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수질검사 실시에 대한 시행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열한번째, 누수, 계량기 고장 등 원인없이 사용량이 월등히 격증되어 요금이 과다하게 부과되는 경우에 공정하고 합리적인 요금조정을 위해 수도사업소별로 공무원과 민간합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상수도요금조정심의위원회의 설치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동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열두번째, 검침업무의 민간위탁을 추진함에 있어 검침인력의 효율적인 관리와 검침비용의 이중지출을 방지하기 위해 검침업무를 담당하던 직원이 설립한 법인에게 동 업무를 수의계약으로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규칙으로 되어 있는 급수 업종변경 및 정수처분 해제에 관한 규정을 조례로 규정하였고, 과태료 처분절차 명시 및 업무용 부대시설에 대한 급수업종 통일적용 등 규정을 보완하였으며, 조문해석상 애매하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표현을 명확하고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정비 보완하였습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이하 전 직원은 전 행정력을 집중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각종 제도개선 등에 힘써 자체 경영개선에 더욱 노력하고, 시민에게 더 좋은 물을 항상 공급하는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로 서울特別市水道條例改正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金鍾來;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金南中;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에 검토의견 부분입니다.

.....
(報告)

서울特別市水道條例改正條例案 檢討報告書

(뒤에 실음)

.....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委員長 金鍾來; 수고하셨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회의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서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松竹 委員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松竹 委員; 李松竹 委員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왔고, 전번에 제가 또 질문을 드렸는데 이발소는 영업용이고 미장원은 가정용이라는 것은 형평상 절대로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발소나 미장원이 동일하게 영업용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次長 金弘石; 이 부분은 위원님들이 결정해 주시면 거기에 따르겠습니다. 당초에는 아마 이발소하고 미장원을 다르게 해서 분리를 해 놓았습니다. 약간 저희들도 모순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李松竹 委員; 그것도 그렇고, 이것도 전문위원 지적하듯이 사회복지시설에도 대중목욕탕과 같이 영업용으로 해 주어야만 어려운 복지시설이 조금이라도 혜택을 보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次長 金弘石;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것은 저희가 볼 때는 수도요금으로 조정하는 것보다는 시나 정부의 일반회계 쪽에서 다른 복지차원에서 별도로 지원을 하고, 수도요금을 체계를 가능하면 단순하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복지시설 쪽은 지금도 상당한 혜택을 다른 쪽에 비해서는 주고 있으니까 그 부분은 너무 안 했으면 하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위원님들께서 결정을 해 주시면 거기에 따르기는 하겠습니다. 저희 본부 의견으로는 복지시설 쪽에는 별도로 다른 쪽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李松竹 委員; 알겠습니다.

그리고 열두번째 검침업무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검침비용의 이중지출을 방지하기 위해 검침업무를 담당하던 직원이 설립한 법인에게 동 업무를 수의계약으로 위탁할 수 있도록 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검침업무를 담당하지 않는 거기에 대한 상당한 실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법인설립을 하면 그것은 이중지출이 되고, 그러면 거기에 있던 직원이 설립한 법인에게 줄 때는

이중부담이 안 된다는 그런 형평상 맞지 않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次長 金弘石; 직원들이 설립한 회사인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주겠다고 하는 것이고, 만약에 그렇지 않고 일반 민간 회사에다가 용역을 주는 경우에는 저희 직원들은 그대로 남아 있는 경우가 됩니다.

그래서 이중으로 비용이 지출되기 때문에 현재 있는 직원들이 퇴직을 하면서 모아가지고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위탁을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李松竹 委員; 그것은 단순한 논리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중부담이라는 말은 단순한 계산에서 나온 것이지, 어떻게 해서 꼭 직원이 설립한 법인에게 동 업무를 수의계약으로 위탁할 때만 그런 이중지출을 방지할 수 있는 것인지 좀 이해가 가지를 않네요.

○次長 金弘石; 좀더 구체적인 것은 저희 經營管理部長이 설명을 올렸으면,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經營管理部長 朴喜秀; 經營管理部長 朴喜秀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은 저희들은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민간업체가 강남, 강동을 내후년 7월 22일부터 시작이 됩니다만, 그러면 강남, 강동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던 인력정원 105명, 현원은 101명입니다만, 그 101명은 저희들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우리 上水道事業本部에 인력풀로 남게 되어 있습니다. 인력풀로 내년 말까지 그 사람들은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과 같은 강남, 강동 같은 경우에는 위탁업체로 선정된 민간업체에 위탁비용이 나가고, 또 그 인력 101명에 대한 인건비를 내년 말까지 지출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에서

이중적인 지출이라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만약에 검침원들이 설립해서 나간 그 검침원 법인한테 위탁을 준다면 제가 말씀드린 위탁비용만 주면 되는 것이고, 그 검침원에 대한 인건비 같은 것은 별도로 지출이 안 된다는 얘가지요.

우리 예산상의 지출은 그런 것은 필요가 없다는 얘가지요. 그런 의미에서 이중지출이 예방될 수 있다는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李松竹 委員; 아니, 다른 사람이 설립을 해도 이중지출은 되지 않잖아요. 거기에서 월급을 주는 것이지, 上水道事業本部에서 월급을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經營管理部長 朴喜秀; 그러니까 민간업체에서 위탁업체로 선정된 업체가 검침원들을 흡수한다는 전제하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위원님께서서는?

○李松竹 委員; 아니지요. 지금 현재 물론 구조조정에 의해서 그 인원을 흡수해서 직원들을 다시 근무할 수 있도록 해주는 처사는 그것은 옳은 처사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제3의 인물이 법인 설립을 했을 때는 또 거기에 있던 직원이 설립을 했을 때와 동일하지, 어떻게 있던 직원이 설립할 때는 이중지출이 안 되는 것이고 타인이 법인설립을 했을 때는 이중지출이 되느냐 하는 문제인데…….

○經營管理部長 朴喜秀; 아니, 그러니까 검침원들이 법인을 설립해서 그 업무를 위탁받는다면 일단 공무원 신분은 상실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李松竹 委員; 그렇지요.

○經營管理部長 朴喜秀; 그러면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강남, 강동의 예와 같이 그 검침원 101명은 내년 말까지는 우리 인력풀로 해서 저희들 본부나 시 차원에서 인건

비를 내년 말까지는 지출을 해야 하거든요. 그 대신 검침원들이 퇴직 후에 설립한 법인이라면 예를 들면 그 검침원들은 법인을 설립함과 동시에 공무원 신분을 상실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검침원들에 대해서는 내년 말까지는 인건비를 지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李松竹 委員; 앞으로가 문제가 아니고 한계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잔여 몇 개월 동안에 내년 말까지만 거기에서 이중지출이 안 된다는 것이지, 그 이후는 마찬가지로 결론 아납니까?

○經營管理部長 朴喜秀; 아니, 내년 말까지 이중지출이 되는 것이지요.

○上水道事業本部長 朴鍾玉; 내년 말까지만 우리 시에서 봉급을 주어요. 그러니까 2001년부터는 그 사람을 봉급을 안 줍니다.

○李松竹 委員; 글쎄, 봉급을 안 주는데 다른 사람이 법인설립을 해도 시에서 월급을 안 주는 것은 마찬가지로 아니겠지요?

○經營管理部長 朴喜秀; 아니, 다른 법인이 위탁을 받게 되면 어차피 민간위탁을 하려면 계약을 하고 위탁비용을 지출할 것 아납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민간업체에다가 그러면 그 위탁비용은 업무를 위탁했으니까 위탁비용은 당연히 지출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나머지 검침원들은 일단 자기 담당하던 업무가 민간위탁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자기의 업무가 없어진 것 아납니까?

결국 구조조정을 해서 그 인력이 결국에 인력풀로 들어오게 되면 그 검침원들에 대해서 내년 말까지는 인건비를 지출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결국 검침원들에 대한 인건비 내년 말까지 지출, 그리고 업체에 대한 위탁용역 비용은 또 별도로 지출, 그런 의미에서 이중적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李松竹 委員; 아니, 지금 물론 설명이 타당한 면이 있지만, 검침원을 말하는 것보다는 그 설립자가 거기에 근무 안 하는 사람이 설립을 했다 하더라도 그 전 검침원들을 흡수할 수 있다는 결론입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朴鍾玉; 그런 말씀도 가능하지만 저희들은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이 나가서 하는 이야기는 보통 우리 상식적으로 가령 50명이면 25명 이상을 흡수를 하게 된다 할 것 같으면 그 말씀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현재 지금 50명이 검침을 하고 있는데 가령 다른 사람이 설립을 해서 25명 이상을 데리고 왔을 때 인정하겠느냐 그런 말씀이죠?

○李松竹 委員; 지금 저의 질문요지는 인원보다도, 인원이 25명이든 50명이든 간에 거기에 담당하던 직원이 설립하는 것과 거기 담당하지 않던 사람들이 설립하는 데에는 그 검침원들 흡수하는 데는 마찬가지로, 이런 얘기죠.

○上水道事業本部長 朴鍾玉; 그것은 좀 틀립니다.

○朴來雨 委員; 지금 7월 20일부터 위탁을 한다고 그랬죠?

○上水道事業本部長 朴鍾玉; 22일부터.

○朴來雨 委員; 22일부터. 그렇다면 강동수도사업소하고 강남인가 두 사업소에서 기본 검침인원을 2000년 말까지 풀팀으로 해서 봉급을 준다고 방금 말씀하셨지요?

○上水道事業本部長 朴鍾玉; 네.

○朴來雨 委員; 그렇다면 수탁을 좀 늦게 하면 2000년도 말까지 잡니까, 아니면 계속 연장이 됩니까? 기간이 있습니까?

○上水道事業本部長 朴鍾玉; 지금 2년간 계약했었거든요.

○朴來雨 委員; 아, 좋습니다.

2년간 계약을 두고 앞으로 다른 사업소도 위탁을 줄 때는 계속 그 사업소에 있는 검침원들도 2년간 그대로 계속 연장이 될 건가요?

○上水道事業本部長 朴鍾玉; 아니죠. 지금 현재 저희들은 내년까지, 우리 공무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년도 말까지 풀로 들어간 사람들한테도 봉급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朴來雨 委員; 아니 글썄, 내년 말까지 그렇다면 기왕이면 팀들을 조금 더 활용을 하고 조금 나중에 수탁을 주었으면 낫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上水道事業本部長 朴鍾玉; 그런 것은 아니죠.

○朴來雨 委員; 아니다니요?

○上水道事業本部長 朴鍾玉; 이번에 공개를 해 봤더니 강동은 58%, 강남은 48%입니다. 평균해 보니까 현재 비용의 53%만 가지고…….

○朴來雨 委員; 본부장님, 그 얘기 아니고 지금 기본 풀팀들이 2000년 말까지 강동이나 강남에 봉급을 준다는 그 얘기 아닙니까?

○上水道事業本部長 朴鍾玉; 네.

○朴來雨 委員; 그러면 그 인원을 조금 더 사용을 하고 검침수탁을 조금 늦게 계약을 해도 되지 않느냐 그 얘기입니다.

○委員長 金鍾來; 아니, 지금 이런 얘기에요.

지금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년까지 봉급이 나가니까 이중적이라는 얘기는, 지금 만약 새로 수탁자를 정하더라도 그 사람한테 또 위탁금이 나가고, 또 쉽게 얘기해서 풀제로 되더라도 2000년 내년까지는 봉급이 나가니까 이중

적이지 않느냐, 그래서 본부에서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빨리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고, 지금朴委員님 질문은 이런 얘 기초. 될 수 있는 한 아까 수탁자 기간을 지금 정하지 말고 이 다음에 정하면 될 것 아니냐 이런 얘 기초?

그런데 본부장님 얘기는 또 무슨 얘기냐 하면, 빨리 지금 정할수록 아까 예산 절감된다, 이런 얘 기예요. 58%, 53%…….

○經營管理部長 朴喜秀; 그러니까 朴委員님 말씀은 어차피 그 사람들이 구조조정으로 해서 남은 잉여인력을 2000년 말 까지 풀로 관리해서 인건비 같은 것을 시에서 지출하기 때문에 가능한 한 검침업무 민간위탁을 늦추면 이중지출이 줄 어들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이시지요?○朴來雨 委員; 네, 그 령지요.

○經營管理部長 朴喜秀; 뭐 그런 측면은 있습니다만…….

○朴來雨 委員; 그런 측면이 아니라 그것이 지금 보이잖아.

○金在實 委員; 그러면요, 만약에 검침원들이 나가서 법인체 를 설립했다 말입니다. 내일이라도 나가서 설립했어요. 그 럼에도 불구하고 내년 말까지 월급을 줍니까?

○經營管理部長 朴喜秀; 아니죠. 그것은 안 주죠.

○金在實 委員; 안 주니까 나가버리면 이익이라는 얘 기예요, 여기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委員長 金鍾來; 예산상 이익이라 이 말이에요. 이중적인 지출이 안 되잖아요.

○金在實 委員; 이중이 아니죠. 왜냐 하면 나감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돈 지출한다고 하면 이중적이지만, 나가면…….

○朴來雨 委員; 제 말 들어봐요. 나갔을 때는 이미 공무원 신분을 사표를 내고 가기 때문에 법인설립한 그 때는 지금

월급을 줄 필요 없고, 지금 현재 법인설립 않고 있을 때는 2000년 말까지는 지금 상수도본부에서 봉급을 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經營管理部長 朴喜秀; 그렇습니다.

○朴來雨 委員; 그렇다면 2000년 5월에 민간한테 검침의무를 준다면 그 동안에 우리가 이중경비 낼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거지. 아니, 예를 들어서 폴팀을 2000년 말로 시한을 주었다면…….

○經營管理部長 朴喜秀; 폴에 대한 관리를 2000년 말까지 되어 있는 것은 법적사항입니다.

○朴來雨 委員; 법적 사항이죠. 그렇다면 이것 너무 일찍 저기를 둔 것 아닙니까?

어차피 2000년 말로 주었다면 수탁을 너무 일찍 주었지 않느냐 이거지, 이중으로 나가는 이 시점에서는.

○上水道事業本部長 朴鍾玉; 그런데 우리가 법인을 만들어서 이 사람들에게 나가도록 하는 것은 고용을 우리가 책임져 준다는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宋美花 委員; 위원장님, 잠시만요.

○委員長 金鍾來; 얘기하세요.

○宋美花 委員; 그러면 좋습니다.

본부장님, 지금 어디에 근거해서 민간위탁을 시행하시는 건가요?

○經營管理部長 朴喜秀; 그것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宋美花 委員; 네, 말씀하십시오.

○經營管理部長 朴喜秀; 민간위탁은 기본적으로 행정사무의 위임과 위탁에 관한 규정이라는 대통령령이 기본적으로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법이고, 저희들은 오늘 조례상정안에 들어가

있습니다만, 조례규정상에 검침업무는 민간위탁을 줄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이 우리 수도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宋美花 委員; 지금 여기 수도조례에 있다고요? 어디 몇 조에 있습니까?

○經營管理部長 朴喜秀;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시면 좀 이해가 쉬우실 것 같은데요.

○宋美花 委員; 말씀하십시오. 보고 있습니다.

○經營管理部長 朴喜秀; 현행규정에 제40조입니다. 20페이지요.

○宋美花 委員; "시장은 경비절감 및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 회계.법인 또는 공동주택관리주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經營管理部長 朴喜秀; 그렇습니다.

○宋美花 委員; 이것 가지고 위탁을 하는데 어쨌든 위탁을 결정하시면서 저희 의회하고는 논의하지 않았습니까. 결정되고 나서 저희에게 보고되었습니까. 맞습니까?

○經營管理部長 朴喜秀; 저희들이…….

○宋美花 委員; 맞습니다. 지난번 회기 때 몇 개 업체가 했는데 강동하고 강남하고 두 군데 위탁계약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의 53% 정도면 하고 예산절감을 했습니다라고 지난번 회기 때 보고했어요.

○總務部長 金奉鉉; 總務部長 金奉鉉입니다.

저희가 구조조정 결과가 나오고 나서 즉시 위원회에 간담회 형식으로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입찰을 하기 전에 검침 민간용역을 하는 데 있어서 방법을 두 가지를 제시를 해서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첫째는, 아까 말씀드린 자회사식으로 우리 검침원들이 하는 방안, 그 다음에는 순수하게 외부 민간인에게 위탁하는 방안, 두 가지 안을 가지고 하면서 우리는 일단 우리 검침원들이 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겠다 하는 것을 저희 본부장님께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朴鍾玉; 아마 여러 번 드린 바가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宋美花 委員; 좋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강남하고 강동 두 군대를 민간위탁을 하셨는데요. 왜냐 하면 이것이 지금 조례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습니다.

강남하고 강동이 지금 저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주신 자료에 의하면, 사업소별 업무여건에 보면 강남하고 강동이 아파트 점유율이 50% 이상입니다. 맞습니까?

○經營管理部長 朴喜秀; 네.

○宋美花 委員;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아파트 점유율이 50% 이상이라는 것은?

○經營管理部長 朴喜秀; 그것은 저희들이 아파트 점유율이 많다는 것은 아무래도 검침업무가 일반적으로 검침을 하기에 좀 수월하다, 수월한 지역이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宋美花 委員; 검침하기가 지금 강남하고 강동은 아파트 점유율이 50%가 넘기 때문에 검침하기가 비교적 용이한데 이 부분부터 상수도사업본부가 우리하고 논의를 했다고 하지만, 하여튼간 구체적인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논의가 없었는데 이 부분을 용역을 주었습니다.

두번째로, 강남하고 강동 이 두 군대는 유수율 측면에서는 어떻습니까? 강남은 유수율이 71.6%고 강동은 유수율이

77.5%입니다. 두 군데 다 저희 11개 수도사업소 중에서 우수율이 제일 좋은 1·2등을 달리고 있는 데입니다. 이 부분은 또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經營管理部長 朴喜秀; 글썽요. 우수율, 저희들이 4개 권역을 나누어서 검토를 할 때 우리가 4개 권역 중에서 1개 권역을 선정할 때 저희들 나름대로 판단했던 사항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검침여건이 그래도 조금 수월한 지역, 그리고 예를 들어서 아무래도 새로운 업체가 들어와서 일을 하게 되기 때문에 검침여건이 전체적으로 봐서 그래도 좀 수월한 지역을 선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판단을 가지고서 저희들이 결정을 했던 사항입니다.

○宋美花 委員; 검침여건이 왜 수월한 게……. 법에 위반됩니다. 수도계량기 점검 등 위탁에 보면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그러면 누구의 효율성을 살피는 것입니까, 이것이? 상수도사업본부의 효율성입니까, 아니면 위탁 업체의 효율성입니까? 여기서 효율적인 업무수행이라는 것이 어느 부분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입니까?

○經營管理部長 朴喜秀; 본부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입니다.

○宋美花 委員; 본부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면 당연히 제일 열악한 지역, 우수율도 제일 낮은 지역 그 쪽으로 하셔야지요.

○上水道事業本部長 朴鍾玉;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려서요. 저희들이 자신이 없었기 때문에 시정개발연구원에다가 용역을 의뢰해서 거기 용역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은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솔직한 심정입니다.

○宋美花 委員; 용역결과가 강동하고 강남 먼저 주라고 거기가 특정 지역을 지정해 났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봤습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朴鍾玉; 그 내용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宋美花 委員; 강남하고 강동을 먼저 줘라 그런 것 없습니다. 다시 한 번 읽어 보세요, 본부장님.

강남하고 강동을 우선적으로 민간위탁을 주는 것이 여러 가지 경영분석면에서 옳겠다, 뭐 파급효과가 크겠다, 아니면 효율적이겠다, 이런 지적 없습니다.

○經營管理部長 朴喜秀; 강남, 강동지역을 우선적으로 명기는 해 냈습니다.

○宋美花 委員; 그러니까 4개 권역별로 해서 했지 강남, 강동 이 두 지역을 먼저 하라는 그런 명시적인 것이 없습니다.

○經營管理部長 朴喜秀; 검침업무 민간위탁…….

○宋美花 委員; 안 돼 있다니까요? 그러면 우리는 읽어 보지도 않고 와서 위원들은 여기…….

○上水道事業本部長 朴鍾玉; 지난번에 車星煥委員님께서 몇 번 질문을 하셔서 저희들 그 때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거 되어 있습니다.

○宋美花 委員; 강남하고 강동이 명시되어 있는 시정개발연구원 거기 카피해 보세요. 그리고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연구한 것이 왕도가 아닙니다.

우리 지난번에 다른 동료위원이 지적했지만 시정개발연구원에서는 하나의 연구사항이고 그것을 반영해서 우리 상수도사업본부나 각 국별로 실별로 맞게 새롭게 자기가 맞게 용역을 검토하고 반영할 것을 반영하는 것이 그게 무슨 법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부장님, 우수율이 아까 위탁주는데 상관없다라고 했는데 우수율을 어떻게 계산합니까?

회계상 계산하는 것 말씀해 보세요.

○經營管理部長 朴喜秀; 우수율은 저희들이 생산해서 공급하는 양 분의 실제로 전체 사용량으로 계산합니다.

○宋美花 委員; 우수율을 우리가 생산을 했으면 그것이 회계장부에 기록되는 돈을 우수율이라고 합니다. 맞습니까? 우리가 돈으로 들어온 것을 우수율로 따지고 있잖아요, 어쨌든 지금?

○經營管理部長 朴喜秀; 전체 생산량 중에 돈으로 받아들인 수량.

○上水道事業本部長 朴鍾玉; 받아들일 수 있는 수예요, 못 받은 것도 있기 때문에.

○宋美花 委員; 그러니까는 회계장부에 잡힐 수 있는 것, 못 받는 돈도 회계장부에 잡힙니다. 회계장부에 잡힐 수 있는 돈이 우수율인데 지금 우수율이 강남하고 강동이 70%를 다 상회한다는 것은 그만큼 수입이 좋다라는 얘기입니다.

왜 이 두 군데를 해서 말썽을 이렇게 만드세요, 지금 이 두 지역을 민간위탁을 먼저 주시고?

그리고 이 민간위탁 준 것이 어떻게 법에서 정한 경비절감이 됩니까? 결국 경비절감이 되는지 지금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따져 봅시다.

어떤 면에서 경비절감이 됩니까?

○上水道事業本部長 朴鍾玉; 당장에 지금 100이라는 것을 가지고 할 때 우리가 58%를, 강동이 58%거든요. 또 강남이 48%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2개 합치면 53%가 되는데 아, 당장에 경비가 절감되지 않습니까?

○宋美花 委員; 경비가 절감된다고요?

○上水道事業本部長 朴鍾玉; 네.

○宋美花 委員; 그러면 본부장님, 강남하고 강동 두 군데 검침원 105명 돈 줍니다. 그렇지요?

인건비 줍니다, 2000년 말까지 줍니다. 2000년 말까지 주고 이것이 지금 7월 22일부터 민간위탁 가면 민간위탁비용 줍니까, 안 줍니까?

○上水道事業本部長 朴鍾玉; 민간위탁비용 줘야죠, 당연히.

○宋美花 委員; 민간위탁비용 주면 지금 저희가 이중으로 부담하는 것이지, 어떻게 이것이 예산의 절감효과입니까?

○上水道事業本部長 朴鍾玉; 그것은 법적으로 풀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내년까지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宋美花 委員; 그러니까 법적으로 되어 있으면 다른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다렸다가 그만큼 검토를 한 다음에 그것 정리하면서 동시에 할 수 있도록 하셔야죠. 이것이 이중예산을 낭비하고 있으면서도 예산절감 효과라는 이렇게 포장해서 오시면 누가 설득을 당하겠어요?

그리고 효율적인 업무수행 아닙니다.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아주 쉽게 생각하면 됩니다, 본부장님.

저희가 지방자치제를 하는 것 중에 가장 기초적인 ABC가 지방자치를 통해서 은평구면 은평구에서 정부에서 하지 못하는 어떤 사업이라든가 그런 정책을 한번 가동시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지방자치를 민주주의의 실험장이라는 그런 말을 우리가 쓰기도 합니다.

사업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위탁을 주기로 여러 연구용역보고서와 우리 上水道事業本部の 의견과 우리 議會의 의견과 서울시 정책 이런 것들이 맞아서 용역을 주는 것이 장기

적으로 효율적이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으면 가장 작고 가장 우리 공무원들이 하기에 어려운 곳 그런 곳을 주셔서 얼마큼 효율성이 제고되었는지, 그 사람들이 회계상의 문제가 있어서 우수율 같은 것 누수되는 데를 적극적으로 찾아내는지, 이런 것을 검토하셔야지, 왜 가장 인구수도 많고 요금징수액도 제일 많고 아파트단지도 많고 우수율도 높고 이런 데를 두 군대를 딱 민간위탁을 주셔서 많은 사람으로 하여금 오해의 여지를 사시느냐고요? 제가 본부장님하고 말씀드릴 때마다 의회에서 본부장님께서는 늘 "나는 투명하게 합니다. 모든 물건을 다 조달청에서 하도록 하고, 위원님 나는 그런 오해를 받고 싶지 않습니다." 하고 그렇게 말씀하는데, 그런 오해의 소지를 만드시지 말고 업무를 하시는데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살피시고 책임지시고 그 다음에 따져보시는 것이 오히려 그런 투명성을 제고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만 각 수도사업소별로 민간위탁 주는 것, 위원회 구성된 것, 의회하고 다시 상의해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하시든지, 아니면 그 위원회를 다시 구성 하시든지 하십시오.

○金基星 委員; 서울시내 검침원이 모두 몇 명이에요?

○經營管理部長 朴喜秀; 517명입니다.

○金基星 委員; 지금 4개 권역별이 어디어디입니까? 분류가 되었습니까?

○經營管理部長 朴喜秀; 저희들 구분은 강북지역 2개, 강남지역 2개 해서 강북지역은 지금 수도사업소 단위로 말씀드리면 중부·서부·은평, 그리고 동부·성북·북부 이렇게 하나씩 하고, 강남지역은 강서·영등포·남부사업소 한 권역, 그 다음에 강남·강동사업소 한 권역, 이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金基星 委員; 그런데 왜 굳이 4개 권역별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강동과 강남을 국한시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조금 전에 우리 宋美花 委員이 얘기했던 것처럼 아파트가 밀집되어서 수월하게 검침하겠다는 의도밖에 안 되는데 지금이라도 본위원의 생각 같아서는 강남이 한 군데 있으면 강북 권에서도 예를 들어서 강북구도 있어요. 그런 데는 아파트보다 단독세대가 많은 곳으로 그런 데를 하나 선정하는 것이 어떨까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上水道事業本部長 朴鍾玉; 위원님, 저희들이 지난번에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드린 서울特別市 上水道事業本部 구조조정 및 경영개선 방안 경영진단이 있습니다. 거기에 페이지를 볼 것 같으면 2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소별 위탁대상 결정안이라고 해서 수도사업소에서 1차분이 강동·강남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한강 남동권이요, 그 다음에 북부·성북·동부, 한강 북동권 이렇게 해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여기 있는 보고서 그 내용을 그대로 원용을 해서 강동하고 강남을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金基星 委員; 하여튼 좋습니다.

제가 또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은 검침원들이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그 법인설립을 하신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500여 명에 달하는 검침원들이 한 회사에 예를 들어서 갑을이라는 법인주식회사를 만들었을 때 그 회사가 서울特別市の 상수도에 관한 검침은 앞으로 계속 맡게 됩니까?

○上水道事業本部長 朴鍾玉; 그렇지 않습니다.

○金基星 委員; 그러면 거기에 상응하는 법인이 다른 회사가 설립했을 때 그것을 공개적으로 한 해 한 해 바꿀 예정입니까?

○上水道事業本部長 朴鍾玉; 저희들은 지금 안입니다만, 일단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나머지 우리 강동·강남만 빼놓고는 이것이 분산되도록 합니다만, 그 사람들이 어떤 회사를 50% 이상 현재의 검침원들이 나가서 회사를 설립하게 되면 거기에다가 수의계약을 한 5년 정도, 왜 5년을 주느냐 하면 그때는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현재 이 사람들이 있는 것하고 나가서 회사를 설립하는 것하고 똑같은 수지 계산을 하는 것이 한 5년 정도가 됩니다. 왜냐 하면 내년 연말이 되면 1년 6개월 아납니까? 1년 6개월 봉급을 받으면 그것이 50% 잡고 3년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지금 현재 봉급을 현재보다 한 15% 감하면 실질적으로 사장하고 경리원하고 쓰기 때문에 지금 현재 받고 있는 것보다 한 20% 안 받기 때문에 그것을 3년 동안에 60%입니다.

○金基星 委員;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그 뜻도 있겠습니다만, 漢江管理事業所에서도 지금 매점이 문제가 되어서 계속 그것이 언론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매점도 처음에는 일반노점상들이 와서 10년을 내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우회 같은 데 그런 데서 독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조례안에 어떤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위탁해서 공개입찰을 한다든지, 어떤 법적 근거가 없이 계속 예를 들어서 이분들이 나오신다면 과거에 우리 검침원동우회 같은 것을 만들어서 설립회사가 계속 몇 년이고, 수십년이고 할 수 있는 그런 독소조항이 있지 않는가, 그래서 제가 묻는 것입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朴鍾玉; 그럴 염려는 전혀 없다고 생각
됩니다만, 지금 연수를 딱 정해서 계약을 하기 때문에…….

○金基星 委員; 알겠습니다.

○委員長 金鍾來; 柳辰永 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柳辰永 委員; 柳辰永 委員입니다.

구조조정에 따라 10개 정수사업소를 7개로 축소했지요. 3
개 정수사업소 명칭을 정수장으로 바꾸었는데요, 사업소장 4
급을 정수장 5급으로 한 것이 구조조정인가 묻고 싶습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朴鍾玉; 그것도 구조조정으로 봐야 합니
다.

○柳辰永 委員; 정수장 5급의 보고체계가 1개 더 추가되었
는데 행정상 무리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

○上水道事業本部長 朴鍾玉; 아직까지는 무리 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됩니다만, 더 지내봐야 하겠습니다.

○柳辰永 委員; 사업소에서 정수장으로 축소된 3개소 보광
동·신월·노량진정수장에 대해서 사업소와 정수장과의 운영에
따른 장·단점의 비교를 자료로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朴鍾玉; 알겠습니다.

○委員長 金鍾來; 수고하셨습니다.

金判吉 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判吉 委員; 金判吉 委員입니다.

방금 검침원에 대해서 답답한 얘기를 들었는데 사실 시에
서 직영한 분야를 민영화할 때는 제일 쉬운 부분부터 내줍
니다. 그런 말을 속 시원히 해야지, 청소행정 같은 경우는
산동네는 절대 주지 않습니다, 적자가 나니까. 그러면 적자
가 안 나고 업자가 현재 1,000만원 쓴다면 500만원 갖고 하

겠는데 그 사람도 타산을 맞출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된 데를 주어야 합니다.

그런 대답을 해야지, 다들 동문서답만 하고 계세요. 그것이 관행입니다.

그리고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체납수도요금 승계업무를 삭제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새로 이사한 사람이 승계를 3개월 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삭제를 했는데, 그러면 이것은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이런 안이 나왔겠지요. 의무를 간소화하려고 그런 것 같은데 그러면 체납된 요금을 징수하는 방법은 따로 있습니까?

○上水道事業本部長 朴鍾玉; 솔직히 말씀드리어서 조금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 동안 수도요금에 대해서 경제적으로 큰 영향을 안 미치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그 사람들을 추적하게 되면 거의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금보다는 저희들이 솔직히 말씀드리어서 수도요금 징수율이 훨씬 높습니다. 높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더 고생은 되지만 계속 추적해서 받을 수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서 너무나 크게 생각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金判吉 委員; 그러나 이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훨씬 고통스럽지요?

○上水道事業本部長 朴鍾玉; 네, 고통스럽습니다.

○金判吉 委員; 그래도 그것을 감수하고 이것을 규제개혁안대로 삭제했다 이거지요?

○上水道事業本部長 朴鍾玉; 네, 그렇습니다.

○金判吉 委員; 그리고 인입관 구경확대 공사비가 보통 창동쪽을 보니까 100만원이더라고 요. 100만원인데 10년 내에

분할 납부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0만원을 10년 내에 분할 납부한다면 1년에 돈 10만원 되겠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입니다. 앞의 조항하고 똑같이 어려운 사람이 못 내고 이사를 가버렸다든지, 또 아주 형편이 어려워져서 못 내었다면 10년이라는 세월이 긴데, 또 그 사람이 사망을 해 버렸다든지 뭐 이런 일이 생길 때는 이것은 10년이라면 너무 길어서 체납이 많이 되지 않겠는가? 못 받을 경우가 많이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上水道事業本部長 朴鍾玉; 지금 저희들이 우리 수도사업 소장들로 하여금 알아본 바로는 한 5,700가구가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법이 통과되어서 시행이 될 때는 한 1만 가구 정도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정도입니다.

그런데 1만가구는 실질적으로 우리 수도전이 190만전이 되기 때문에 1만가구는 저희들이 잘만 하면 이분들한테 10년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고통스럽습니다만, 계속 추적하면 될 것 같은데 10년이라는 기한이 있기 때문에 거의 다 들어 오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金判吉 委員; 10년 동안에 그것을 다 받아들일 수 있다고요? 이럴 경우 저는 이런 조항보다는 적어도 공급자가 장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입선 공사를 한다, 구경을 높여서 한다 할 적에 100만원을 안 받아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이것을 지금 여러 가지 측면에서 받고 있겠지만, 지금 경제원리에 의한다면 안 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럴 용의는 없습니까?

○上水道事業本部長 朴鍾玉; 현재 법체계로는 그럴 용의는

없고요, 형평부담의 원칙에 의해서도 10년 안에 꼭 받아야 합니다. 만약에 안 받는다고 하면 저희들 직무유기가 되기 때문에 더 열심히 받도록 하겠습니다.

○金判吉 委員; 그러니까 여기 구경확대 인입선 공사비는 수도물을 판매하는 서울시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구멍가게에서도 아이스크림을 판다 하면 냉장고 갖다 주지 않습니까. 거기에 넣어 놓고 팔아라. 여러 가지 예가 있습니다. 그것이 다 경제원리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런 것까지 다 물을 파니까 물이 잘 들어갈 수 있도록 인입선 확대해서 하는 것은 물이 안 들어오니까 수압이 낮아서 그런 것 아닙니까? 수압이 낮으니까 잘 들어가도록 해 주고, 그 돈은 안 받고 물만 팔면 되는 것이지. 이 지역이 대부분 영세민지역입니다. 그래서 아주 어려운 사람들이 여기서 따가고 저기서 따가고, 그러니까 중간에서 새로 집을 짓고 따가니까 수압이 낮아지니까 물이 질질 소변보는 것처럼 나와요. 그러니까 답답하니까 "공사해 주시오" 하면 그 안의 공사는 더 받더라도, 옥내 공사비는 받더라도 옥외 들어온 공사비를 100만원까지 받는다면 그 것이 문제가 있다, 그래서 수도물을 파는 서울시가 부담을 해야 된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朴鍾玉; 그것은 앞으로 연구할 사항이기는 사항입니다만, 현 체계로는 저희들이…….

○金判吉 委員; 조례에서 그것을 삭제를 할 수가 없어요?

○上水道事業本部長 朴鍾玉; 그러면 전체가 다 밸런스가 안 맞기 때문에 그것은 곤란합니다.

○金判吉 委員; 그리고 제가 직접 민원을 겪은 일인데요. 수도사업소의 잘못으로 계량기나 수도관이 파열이 되어서 많은 수돗물이 새어 버렸습니다. 그러나 수용가에서는 검침이 올라갔어요, 검침을 한 대로 나오니까. 한 달에 3만원이나 내던 집에서 20만원이나 30만원을 물게 된다 말입니다. 그 절차를 잘 몰라서 그것을 어떻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2개월이 넘었으니까 이의신청이 안 됩니다. 이런 경우가 왕왕 있는데 이런 경우의 구제방법이 꼭 2개월이 넘으면 그 돈을 받아야 한다. 실제로는 그 돈이 갑의 잘못으로 을이 부담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갑의 잘못이 있으니까 2개월 이런 기한을 두지 말고 이것은 갑이 부담을 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것을 조례로 2개월 되어 있으면 바꾸어 가지고 1년이랄지 언제라도 신고만 하면 이의신청을 받아 준다 할지…….

○經營管理部長 朴喜秀; 經營管理部長입니다.

○金判吉 委員; 네, 답변을 하세요

○經營管理部長 朴喜秀; 지금 기본적으로 사용료를 포함한 모든 지방세의 부과결정에 이의가 있을 때는 사실 地方稅法에서 60일이라는 기간을 정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조례에도 그것에 따라서 60일로 되어 있는 사항인데 요, 그것을 조례를 개정해서 될 사항은 아닙니다.

왜냐 하면 地方稅法에서부터 이미 이의신청기간을…….

○金判吉 委員; 법을 바꾸어야 되겠네요?

○經營管理部長 朴喜秀; 네, 그렇습니다.

그것을 한번 저희들이 제도개선 차원에서 위원님 말씀을 참고하겠습니다.

○金判吉 委員; 그리고 제18조제2항에 급수제한 정지의 결

과 급수사용자에게 손해가 생길 경우 시장이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독점공급자의 횡포로 생각이 돼요.

그런데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급수제한이라든지 영업소에서 일상적으로 죽 물을 쓰다가 이 쪽 갑의 사정으로 급수가 제한된다, 또 급수가 중단된다, 이럴 경우에는 많은 피해를 입을 결과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지금 제18조제2항 이야기입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朴鍾玉; 네.

○金判吉 委員; 그런데 이럴 때는 좀 그것을 고려해 줘야 되는데 그것을 그대로 수요자는 감수를 해야 되는 이런 입장에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독점공급자의 횡포로 본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런 것은 개정의 여지가 없습니까?

○上水道事業本部長 朴鍾玉; 아니, 있습니다.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어차피 법 위반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소송에 가면 지게 되기 때문에 우리 나름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번에 차라리 삭제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金判吉 委員; 삭제를 하시겠습니까?

○上水道事業本部長 朴鍾玉; 네, 위원회 위원님 발의로 해서 말씀해 주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金判吉 委員;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39조 말이죠. 상수도요금조정심의위원회 설치 건입니다.

상수도 요금관련 민원사항을 조율키 위해서 수도사업소에 상수도요금조정심의위원회를 두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심의위원회 자체가 행정의 일을 하는 관청 아닙니까?

○上水道事業本部長 朴鍾玉; 네.

○金判吉 委員; 그런데 거기서 심의를 해서 그것이 올바른 결과가 나오겠습니까? 상급기관에서 한다면지, 1차 심의를 상수도관리사업소에서 하고 다음에 행정법이고, 소원전치주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소원을 거쳐서 나중에 본부에서 결과를 심판한다든지 이래야지, 행정행위를 하는 기관에서 바로 해서 바로 시행하고 상급기관에 올라오지도 않고 그러면 그것이 의미가 없어요. 자기가 자기 잘못을 시인하겠습니까, 정당화하려고 하지? 이런 조항도 이것이 좀…….

○經營管理部長 朴喜秀;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經營管理部長입니다.

지금 아까도 60일이라는 이의신청을 답변드렸습시다만, 이의신청이라는 것은…….

○金判吉 委員; 그것은 제44조에 나왔네요.

○經營管理部長 朴喜秀; 그것은 권리구제절차로서 이의신청을 하면 사실 처분청이 지금 처리를 하도록 우리 地方自治法이라든지 地方稅法에서는 처분청이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분청이라는 것은 결국 수도사업소가 되는 것이고, 또 수도요금이라는 것이 결국은 수도물 사용량을 직접 검침하고 부과하는 수도사업소가 가장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처분청에서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이의신청을 처리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의신청 결정에 불복이 있을 경우에는 地方自治法 규정에 의해서 직접 소송을 제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물론 중간기관으로서 우리 上水道事業本部에서도 이

러한 어떤 이의신청이라는 법적인 용어는 아닙니다만, 어떤 이의신청에 문제가 있는 시민들은 예를 들어서 어떤 권리구제 절차가 있습니다.

○金判吉 委員; 행정소송 이야기입니까?

○經營管理部長 朴喜秀; 아닙니다. 이것은 행정소송이 아닙니다.

지금 기본적으로 수도물 사용량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이의신청을 처분청에 하고, 이의신청 결과에 불복이 있을 경우에는 관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地方自治法에서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나 지금 金委員님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上水道事業本部에서 그것을 다시 한 번 중간에서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어떤 기능을 좀 두었으면 하는 말씀 아니시겠습니까?

○金判吉 委員; 그 이야기예요.

○經營管理部長 朴喜秀;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것이 결국 수도요금이라는 것은 수도물 사용대가고, 요금을 검침하고 부과하는 수도사업소가 가장 정확하게 판단해서 처리할 수 있는 것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지금 저희들로서는 별로 필요하지 않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金判吉 委員;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시급수 신청시 수도요금의 선납을 보증금으로 대치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요금의 선납과 보증금과는 어떻게릅니까? 결국은 결과에 따라서 사후 정산하는 것인데 선납은 어떻게, 보증금은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같은 돈 내놓고 정산하는 것 아닙니까? ○經營管理部長 朴喜秀; 운영하는 제도상에서요. 지금 현재는 선납금제도로 운영하고 있

습니다만, 선납금이라는 것은 1년치의 예정사용량에 해당되는 금액을 저희들이 받아서 매월 사용하는 금액을 공제하는 형식으로 지금 저희들이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1년치 수도사용량이 저희들이 작년도 일시급수 신청 즉 뽑아봤더니 한 1개소에서 부담하는 것이 250만원 정도 됩니다. 그것이 너무 지나친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니냐 해서,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250만원 정도의 돈을 받아서 매월 사용하는 양만큼 거기서 차감을 해 나갔는데 앞으로는 보증금…….

○金判吉 委員; 보증금으로 하면 액수가 줄어든다, 그 말이죠?

○經營管理部長 朴喜秀; 네, 일단 일시급수 신청시에 부담하는 것을 선납금에서 보증금으로 바뀌어서 시민들한테 부담을 좀 적게 주자…….

○金判吉 委員; 알겠습니다.

그리고 직결급수는 전 수요가가 의무사항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희망자만 신고해서 시행하는 것입니까?

○給水部長 曹聖鉉; 給水部長 曹聖鉉입니다.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저희가 권장해서 그와 같은 수요가에게 여러 가지 이득이 있는 사항이니까 가급적 수요가들께서 그와 같은 방향으로 해 주십사 하고 하는 것이지,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金判吉 委員;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14조에 인입급수관 및 계량기의 설치 조항이 있는데요.

"설치비용 및 수도계량기 대금은 급수사용자 등의 부담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신 조항에서는 그것을

삭제를 했는데 대금을 받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까?

○給水部長 曹聖鉉; 給水部長입니다.

그 부분은 다른 부분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중으로 명시되어 있는 부분이어서 거기에서 삭제하는 것입니다.

○金判吉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鍾來; 수고하셨습니다.

金在實 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在實 委員; 金在實 委員입니다.

水道條例改正條例案 3쪽 맨 위에 "공동주택관리주체 또는 위탁대상업무에 종사하던 자가 동 업무를 위탁받기 위하여 설립하는 법인에게 당해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함."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위탁대상업무에 종사하던 자가 법인을 설립해서 위탁 받을 때는 수의계약 방법으로 하는 것은 들어 왔고 이해가 가는데, 공동주택관리주체에서 업무에 종사하던 자도 똑같이 이런 혜택을 준다 하고 저는 처음에 이해를 했습니다. 여기 와서 몇 번 읽어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누가 봐도 지금 여기는 공동주택관리주체에서 근무하거나 또는 검침업무에 종사했던 사람이 법인을 설립하거나 그런 사람들은 수의계약의 방법을 할 수 있다,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經營管理部長 朴喜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經營管理部長입니다.

공동주택관리주체에다가 검침업무를 민간위탁하는 것은 저희들이 그 동안 위원회에서 몇 번 보고를 드렸습시다만, 공동주택에 대한 검침업무를 공동주택관리사무소에서 검침을 하도록 해 주고 저희들이 위탁수수료를 지출해 주는 그러한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는 그 사항을 여기다 반영을 시킨 것

입니다.

○金在實 委員;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 문맥을 보면 죽 읽어 보세요. 공동주택관리주체 또는 위탁대상 업무에 종사하던 자가, 그러니까 공동주택관리주체에서 업무에 종사했든지 위탁대상업무에 종사했던 자든지 그런 사람들이 법인체를 설립할 경우에는…….

○經營管理部長 朴喜秀; 이것을 위원님, 이렇게 이해해 주시죠.

○金在實 委員; 이해는 하는데 지금 몇 번 반복해서 읽어 보니까 이해는 가는데 여러 번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처음에는 이것이 이해가 안가더라는 얘기에요.

○經營管理部長 朴喜秀; 저희들은 공동주택관리주체를 A로 보고 위탁대상업무에서부터 법인에게까지를 B로 본것이거든요.

○金在實 委員; 맞아요. 저도 그 소리를 몇 번 읽어서 깨달았어요, 여기 와서. 그래서 본위원 생각으로는 저도 이렇게 오해를 안하게 할 방법이 뭘까 하고 고민을 해 보니까 가장 좋은 방법이 위탁대상업무에 종사하던 자가 동 업무를 위탁받기 위해 설립하는 법인을 먼저 넣고 나중에 공동주택관리주체를 넣으면 그런 오해가 없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上水道事業本部長 朴鍾玉; 그것도 좋겠습니다.

○金在實 委員; 그 다음에 10쪽 제19조에 "급수사용자 등은 필요에 의하여 시장에게 급수의 중지 또는 급수장치의 폐전을 요청할 수 있다."

그런데 급수의 중지는 3월 이내로 한다는 것은 급수가 필요 없어서 이것을 시민들이 폐전을 요청했는데 3개월씩이나

이렇게 기간을 많이 두어야 되는가? 폐전하는 데까지 실제로는 얼마 정도 걸립니까?

○經營管理部長 朴喜秀; 아니, 이것은 중지기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朴鍾玉; 3개월 이내로 한다 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이에요.

○金在實 委員; 3개월 이내에 폐전시켜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經營管理部長 朴喜秀; 아니죠. 예를 들어서 급수를 받을 필요가 없어서 급수중지 신청을 할 때에 그것을 예를 들어서 3개월 이내 기간으로 한다는 얘기죠. 3개월이 넘을 경우에는 폐전을 하라는 얘기죠.

○金在實 委員; 기간을 얘기하는군요.

○經營管理部長 朴喜秀; 네, 기간입니다. 중지 또는 폐전기간입니다.

○金在實 委員; 그 다음이에요.

16쪽에 수질검사에 있어서 제36조제5항에 보면, 검사성적서에 의해서 수질검사 결과는 당해 검사시료에 한하며 광고 또는 선전을 할 수 없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험검사 성적에서 합격이 되는 것은 즐거운 일이고 기쁜 일이고 알려야 될 사항이란 말입니다. 당연히 선전도 할 수 있게 해 줘야 될 것 같고, 포장 등에 표시를 하는 것은 당연할 것 같은데 이것을 금지하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水道技術研究所長 張相愚; 水道技術研究所長 張相愚입니다.

검사시료의 성적은 당해 시료에 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

를 들어 A라는 물 생산업체가 저희들한테 검사의뢰를 해서 검사결과가 나왔다 하더라도 그 점에 대한 어떤 수질기준을 저희들이 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 물 전체가 계속해서 생산하는 물에 대해서 이것은 水道技術研究所에서 검사를 해서 합격품이다, 이런 식으로 선전하거나 광고는 할 수 없다, 그런 취지로 이 조항을 넣게 되었습니다.

○金在實 委員;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구조문대비표를 봐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제5장제28조제2항에 급수사용자 등은 옥내 누수예방……., 즉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의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급수사용자 등이 책임을 진다. 그리고 개정 사유를 보니까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조항을 사용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구체화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선언적인 의미,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조항을 이렇게 써놓은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선언적 의미라는 것은 구체화되지 않고 이것은 없어도 크게 문제가 안 되는 조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 이것을 지적하냐면, 어제 똑같이 이 자리에서 漢江管理事業所의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개정했는데 개정한 골자가 딱 두 가지뿐이에요. 선언적인 의미,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 해야 한다, 이것을 지운다는 것하고, 또 이용시설의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구체화되지 않는 막연한 것 이것 지우자고 어제 조례개정한 것입니다, 漢江管理事業所에서. 이것이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이 사항이 지적돼서 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上水道事業本部의 이 조례도 선언적 의

미를 갖는 구체화되지 않는 막연한 이런 조항은 없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給水部長 曹聖鉉; 給水部長입니다.

지금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현행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표현이. 그래서 그것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애매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구체적으로 옥내 누수예방계량기 및 관련시설물 손상 방지 등이라고 해서 구체적으로 바꾸어서 저희들이 조문에 이렇게 표시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왜 필요하냐 하면, 예를 들어서 계량기가 겨울철에 동파가 되었다 그러면 수요가가 그것을 보온을 해야 된다는 그런 의무를 가져야지만 저희들이 계량기 동파에 대한 교체비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조문이 필요한 것입니다.

○金在實 委員; 좋습니다.

그러면 제28조제1항과 제2항을 비교해 봅시다.

제1항 끝에 보면 "급수장치에 대한 관리는 급수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다." 제2항도 마찬가지로 "급수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다." 그렇게 되어 있던 말입니다.

그러면 위의 상황을 보면 급수장치의 책임범위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제1항에 사용자가 책임진다고 나와 있어요.

○給水部長 曹聖鉉; 그런데요, 단서규정을 한번 봐 주십시오. 단, 수도계량기를 서울시에 기부채납으로 해서 수도계량기가 서울시 재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 재산인데 그 관리는 수요가가 해야 되기 때문에 제2항에 그런 내용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도계량기의 소유가 수요가 것이라고 한다면 방

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이런 말 필요 없이 자연히 자기가 고치고 돈도 자기가 내지만, 그것이 서울시 소유로 되어 있는데 서울시 것임에도 불구하고 수요가가 그것을 관리를 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그 2항이 필요한 것입니다.

○金在實 委員; 1항에 보면 서울시 소유가 되었던 개인의 것이 되었던 일단 계량기부터 그 안쪽으로는 다 수요가가 책임을 지게 되어 있지요. 1항 규정에 그렇지요?

그러니까 대지경계선 밖에 계량기가 설치된 경우에 계량기부터 급수장치의 관리까지도 급수사용자의 책임으로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2항에 있는 것을 다 포함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같이. 태만히 해서 손해가 되어서, 어쨌든 간에 책임이라는 말에 다 함축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모든 것을 책임진다고 그랬습니다, 1항에서.

그런데 2항에서 또 거기서 부분보완을 한 것입니다. 똑같은 내용인데 그야말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이것을 풀이해서 다시 쓰다 보니까 위에 것과 똑같은 내용이 되어 버리고, 뒤에 가 보면 과태료 및 계량기의 고의파손 및 망실 등이 뒤에 다 명시되어 있어요, 보면 죽.

그런데도 그것도 모자라서 제28조제1항에 포괄적으로 다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2항에 이것을 또 넣었습니다.

본위원 생각으로는 2항은 당연히 삭제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朴鍾玉;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金在實 委員; 네, 됐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어제 한강관리사업소 소관 조례를 하나 폐지를 시켰습니다. 어제가 아니고 며칠 전입니다.

그것은 한강 관리하는데 있어서 전문가들의 자문이 필요했기 때문에 市長이 필요할 때 자문을 구하기 위해서 전문가를 초빙해 자문을 듣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조례 폐지한 이유가 漢江管理事業所長한테 주어진 권한을 모를 때 필요할 때 이렇게 자문을 구하겠다, 수시로 정기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필요는 하지만, 그래도 그렇게 하면 자문을 구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이것을 폐지하겠다.

지금 문화일보에 제가 읽어 봤는데 高 市長은 高 委員會라고 나와 있어요. 서울市長이 위원회를 너무 좋아한다는 얘기에요. 그리고 "다 위원회에서 결정했습니다" 하고 핑계를 댄다 말입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78개나 되는 상임위원회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본회의장에서. 그 뒤로 조선일보에서 여러 군데에서 전국의 위원회에 대해서 거론해서 이것은 너무 많다고, 그래서 서울市도 가능한 없애려고 해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수도요금 가지고 요금에 대한 자문을 구하는데 상수도사업본부, 수도사업소 그 직원들보다 더 전문가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것을 가지고 이것을 위해서 각 사업소마다, 사업본부에 하나뿐만 아니라 각 사업소마다 이 위원회를 둔다는 것은 이것은 근본취지와 안 맞다.

그래서 정히 필요하다면, 이것 자체를 필요 없어야 되겠지만 정히 필요하다면 본부에서 해서 준다든지 해서 아까 金判吉 委員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업소에서, 도저히 사업소 차원에서서는 이것은 애매하다, 전문가가 필요하다 하면 옛날에 상수

도사업본부에 근무했던 분들이라든지 전문가들이라든지 그런 분들을 모셔 놓고 하는 그런 위원회 정도, 아직 이렇게까지는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經營管理部長 朴喜秀; 經營管理部長입니다.

아까 金判吉委員님 질문에 답변한 내용과 유사합니다만, 이 상수도요금조정심의위원회는 나름대로의 기능이 있고, 이것이 지금 저희들이 새로 설치하려는 것은 아니고요, 이미 각 수도사업소에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법령에 근거를 하지 아니하고 우리 내부적인 방침에 의해서 설치에 대한 것을 위원회 사실상 있는 조례로써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근거규정을 마련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金在實 委員;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이렇게 조례로 議會에서까지 우리가 명시되어서 이것을 확보시켜 준다 하는 것은 말이 안 맞고, 정 필요하다면 자체 내에서 지금까지 한 방식대로도 좋고, 거기까지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니까. 하여튼 자체적으로 몇 분 모셔서 각 부서에 몇 분 와서 요금에 대해서 잘잘못을 객관적으로 한번 따져 보고, 그것도 안 되면 上水道事業本部에 어떤 위원회를 두어서 거기서 한다든지 하지, 여기서 가능한 위원회를 줄이려고 그러고, 신문에서 한 5일 전입니다.

高 市長은 高 委員會, 이렇게 나와 있는데 위원회 이렇게 만든다는 것은 이것은 취지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朴鍾玉; 네, 그러면 우선 말씀대로 하고요, 정 필요하다면 그 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金在實 委員; 그러니까 지금 위원회 신설하겠다는 이 부분은 전부 삭제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동의 하시지요?

○上水道事業本部長 朴鍾玉;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金在實 委員; 부탁드립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조례를 개정한 적이 있었습니다. 개정한 적이 있었는데 그 때 본위원이 공동주택에 세대수를 구분할 때 최소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을 하자고 제가 질의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가다가 나중에는 지방에서 와서 하숙하는 애들도 혜택을 주어야 되니까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주민등록을 해 놓고 있느냐, 그러니까 그대로 하자 해서 저도 양보를 해서 결국은 주민등록이 안 되어 있더라도 상수도 사업본부 수도사업소에서 가서 실제로 살고 있으면 인정을 해 주자 하고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하면 아마 제23조제2항 같습니다. "2호 이상의 공동주택에서 단일계량기로 계량되는 수돗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량을 호수 또는 사실상 거주하는 호수로 나눈 평균량에 의하여 산정하며, 개별로 수돗물을 판매하지 아니하는 공동급수장치에도 적용한다." 지금 사실상 거주하는 이 부분을 본위원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것으로 하자,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그래도 행자부에서 정해 놓은 규정인데 그것은 최소한도로 가진 사람들에게 하자고 했었는데, 그런데 지금 여기 제23조제1항을 보세요.

"1주택 또는 1호에서 단일계량기로 계량되는 수돗물을 2세대 이상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량을 세대수로 나눈 평균량에 의하여 산정하되, 세대수는 거주하는 방수를 초과할 수 없다." 세대수는 거주하는 방수를 초과할 수 없다, 이것은 제가 논외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세대수로 나눈 평균량에 의해 산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대수의 풀이가 어떻게 되느냐를 맨 앞에 보

니까 지금 개정안 현안도 마찬가지이고, 제2조의 7항 정의를 보니까 "세대라 함은 당해건물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세대를 말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1항과 2항의 얘기가 틀린 것입니다. 2항에서는 실제 거주하는 사람을 세대수로 보고, 다음에 1항에서는 세대인데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지금 말이 안 맞는 거예요.

○經營管理部長 朴喜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현행 조문하고 개정 조문을 사실 내용상에 바꾼 것은 아닙니다. 자구만 수정한 내용인데요. 기본적으로 개정안에 대한 제23조제1항에 대해서는 세대개념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단독주택은 저희들이 세대를 개념으로 해서 세대분할을 적용한다는 그런 의미이고, 제23조제2항에 의한 것은 공동주택, 작년 조례 개정할 때 감안했던 공동주택, 예를 들어서 아파트든지 연립이라든지 다가구주택 같은 경우에는 실제 거주하는 호수를 기준으로 한다는 그런 의미로 저희들이 조문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1항은 단독주택에 관한 사항, 제2항은 공동주택에 관한 사항,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金在實 委員; 글썄, 단독주택이고 공동주택이 그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수요자한테 평등하게 단독에 살든 공동주택에 살든 똑같은 방식으로 적용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단독주택에 살면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만이 사용량을 분할할 수가 있고, 거기서 실제 거주하면 주민등록이 안 되어 있더라도 분할할 수 있고 그러면 안 된다는 얘가지요. 형평성에 안 맞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똑같이 통일시켜야 합니다.

전에 논란 끝에 사실상 거주했다면 여기도 아예 주민등록이라는 말을 빼야 될 것 같아요. 上水道事業本部는 언제나 실제 거주한 사람을 기준으로 한다, 그렇게 세대정의를 해 주어야 할 것 같아요.

○經營管理部長 朴喜秀; 그것은 위원님, 좀 연구검토를 해서 좀 있다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金在實 委員; 네, 그렇게 하세요.

이상입니다.

(金鍾來 委員長, 金鎬一 幹事와 司會交代)

○委員長代理 金鎬一; 金在實 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朴來雨 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來雨 委員; 전에 질의하다가 말았는데 확실히 답변을 듣겠습니다.

지금 민간위탁은 조금 빠른 감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민간위탁은 분명히 이중으로 나갑니다. 민간위탁비 나가고 풀타임 검침원들한테 나가고, 그 기간이 너무 길다는 소리예요. 그것을 분명히 답변을 해 주세요.

아니, 지금 예를 들어서 7월 22일부터 민간한테 위탁을 주었는데 내년 7월 22일 주어도 충분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1년을 앞당길 필요는 없지 않느냐?

○經營管理部長 朴喜秀; 기간은 물론 우리가 2차 구조조정을 하면서 기간에 대해서는 언제 하라는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만, 저희들로 보서는 아까도 본부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민간위탁을 줌으로써 어떤 비용절감 효과라든지 그런 것을 저희들이 가능한 한 빨리 추진을 하려고 시작을 해서 7월 22일부터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풀인력이라는 것이 아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좀 제가 설명을 드리면, 풀인력이라는 것이 2000년 말까지로 되어 있다는 것은 사실상 공무원이라는 것은 자기가 맡은 업무가 없어지면 사실 직권면직이 원칙입니다. 직권면직이 원칙이지만…….

○朴來雨 委員; 잠시만요.

지금 맡은 업무가 7월 22일부터 없어질 판입니다. 그렇죠?

○經營管理部長 朴喜秀; 그렇죠.

○朴來雨 委員; 그렇다면 한 1년간 맡은 업무를 더 줘야지, 지금 부장님 말씀대로라면.

○經營管理部長 朴喜秀; 그러니까 직권면직이 원칙이지만 어떤 신분상의 변동에 대한 완충장치로서 내년 말까지의 기간을 준 것이거든요.

내년 말까지의 기간이라면 오히려 어떻게 보면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자기가 공무원의 신분이 내년 말까지로 끝난다면 그 사람은 나름대로의 어떤 다른 일정의 완충적인 유예기간을 그분에게 주는 것으로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朴來雨 委員; 이해가 아니고 그것은 도저히 지금 본위원은 이해가 안 가는 말씀만 하시는데…….

○經營管理部長 朴喜秀; 그러니까 물론 이중지출이라는 측면에서는, 예를 들어서 지금 일반 민간업체에다가 검침업무를 위탁을 줄 때는 물론 내년 말까지는 이중부담이 저희들이 생깁니다만, 그래서 가능한 한 어떤 검침원들의 자기가 갖고 있는 기술적인 노하우도 활용을 하고, 또 이중부담이라는 그러한 어떤 문제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오늘 이번 조

레개정안에 상정했던 그런 방법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朴來雨 委員; 아니, 자꾸 한 소리 더 하고 싶지는 않은데 지금 명쾌한 답변이 안 나왔기 때문에 다시 얘기를 하는데, 상수도본부에서 검침업무를 민간위탁을 주려는 취지는 진작부터 세워 있었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그 계획을 잘 세워서 한 1년 후에, 금년 7월 22일 아니라 예를 들어서 2000년 7월 22일부터 위탁을 주었다면 1년 동안은 이중으로 경비가 나갈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 동안에 어차피 지금 불필요한 봉급이 나가는데 1년 동안 강동이나 강남 수탁비용은 절약되는 것 아닙니까?

○上水道事業本部長 朴鍾玉; 그러면 만약에 그분들이 그것을 안하고 내년 7월에 한다고 하더라도…….

○朴來雨 委員; 7월이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朴鍾玉; 글쎄, 그런다 할 것 같으면 그 다음에는 이분들한테 고용의무도 있기 때문에 하려고 하는 것이지 공개경쟁 해버리면 53%밖에 안 되는데요. 그래서 이분들을 실질적으로 회사를 설립해서 나갈 경우에는 돈이 안 들거든요. 이중비용도 안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朴來雨 委員; 본부장님, 지금 앞으로 이 조례안을 보면 아무튼 기본 검침인원이 법인을 설립했을 때 5년간 수의계약을 주게끔 되어 있는데, 어쨌든 5년 동안 수의계약을 줄 계획인데 지금 앞으로 다른 사업소에 위탁을 주었을 때 이분들이 법인설립해서 수의계약할 전망이 있습니까?

○上水道事業本部長 朴鍾玉; 전망은 거의 없습니다.

○朴來雨 委員; 전망이 없으면 이것 할 필요가 없잖아요?

○上水道事業本部長 朴鍾玉; 아니요. 우리 검침원들은 있지요. 지금 현재 남부수도사업소에는 벌써 한 20명이 규합해서 이 달 한 22일쯤 발기를 해서 9월쯤, 늦어도 10월쯤 설립해서 내보내려고 합니다.

○朴來雨 委員; 그런데 본위원은 좀 우려되는 것이 검침인원들을 확보해서 돈 있는 분들이 한 50% 지분을 가지고, 나머지 한 50% 검침인원들을 한 50% 지분 주고, 소위 말하는 자본주가 50% 지분 가지고 그럴 염려도 있겠어요. 그럴 염려도 있으면 어떻게 간에 기본검침은 법인을 설립했을 때는 계약을 해 줘야 하는 거죠?

○上水道事業本部長 朴鍾玉; 그렇게 안할 작정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복안은 가령 지금 현재 50명이 TO가 있을 것 같으면 25명 이상만 되면 거기에서 우리가 설립을 하고, 나머지 25명은 어떻게 하느냐. 25명이면 강동에서 한 58% 그것만 주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朴來雨 委員; 다른 위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했으니까 또 다른 위원들 말씀 좀 명쾌하게 해 드리고…….

○上水道事業本部長 朴鍾玉;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지금 저희들 폐부를 찌르는데요. 그럴 것 같으면 내년 7월이나 8월 가까이 돼서, 어차피 12월에 나갈 테니까 그 때 공개를 하는 방법도 있지 않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원리가 안 서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좀 못드리겠습니다.

○朴來雨 委員; 아니, 원리가 왜 안 섭니까? 예를 들어서 내년 7월에 수탁자가 안 나타…….

○上水道事業本部長 朴鍾玉; 말씀이 맞는 것이 되기 때문에 제가 지금 거기에 대한 어떤 이야기가 안 나오고 있어요. 우

선 그것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朴來雨 委員; 그리고 다음 질의는요.

지금 소출수 지역에 공사부담을 10년 동안 하기로 하고, 약 용자지원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給水部長 曹聖鉉; 給水部長입니다.

용자금액은 일단 저희 시 돈을 가지고 용자해 드리는 것이 아니고 은행에…….

○朴來雨 委員; 그렇지. 알아요.

○給水部長 曹聖鉉;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것은 현재 저희가 신청을 받아 봐야 알기 때문에 말씀…….

○朴來雨 委員; 제가 질의하고 싶은 얘기는 기간이 한도 끝도 없이 용자기간이 없어요, 어느 시점까지 해 준다는가.

○給水部長 曹聖鉉; 그것은 현재 은행에서 하고 있는 제도를 저희들이 알선해서 해 준다는 것일 뿐이지, 그것을 10년을 하겠다, 9년을 하겠다, 어떤 우리의 의지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은행에 개발된 상품을 알선해 주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朴來雨 委員; 그러니까 서울시 상수도본부에서 자금을 은행에다 위탁을 주어서…….

○給水部長 曹聖鉉;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은행 자체에서…….

○朴來雨 委員; 은행에서는 그냥 안해 줄 것 아니에요. 담보가 있어야 하고…….

○給水部長 曹聖鉉; 당연한 말씀입니다. 담보 그런 것을 다 해 가지고 간다는 얘기입니다.

○朴來雨 委員; 그러면 우리 본부장님, 뭘 염려는 없다고 해야지 자꾸 다른 해명만 하고…….

○上水道事業本部長 朴鍾玉; 그것은 우리가 부담하는 공사비에요.

또 시설분담금하고 그것이, 우리가 열심히 받으면…….

○朴來雨 委員; 그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給水部長 曹聖鉉;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한 100만원에서 120만원 정도 됩니다.

○朴來雨 委員; 100만원에서 120만원 정도가 상수도본부에서 지원해 준다는 소리잖아요.

○給水部長 曹聖鉉; 아니, 지원이 아니고요.

○朴來雨 委員; 용자?

○給水部長 曹聖鉉; 아닙니다. 그것이 용자가 아니고요. 저희들이 그 돈을 받고 그리고 공사를 했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런데 일시에 그 사람들이 돈 낼 여건이 안 되니까 그것을 10년 동안 분할해서 저희들이 받게 됐다, 공사는 먼저 해 드리고.

○朴來雨 委員; 선 공사를 해 주고?

○給水部長 曹聖鉉; 네, 그렇습니다.

○朴來雨 委員; 그렇다면 그것은 아무 장치도 없이 그냥 무조건 실적만 들어오면 어쨌든 간에 상수도본부에서는 120만원이라는 돈은 공사비로 투자를 해 주는 것 아닙니까?

○上水道事業本部長 朴鍾玉; 맞습니다. 선 투자하고 후에 분할해서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朴來雨 委員; 그리고 또 용자해 주는 것은 은행에서는 은행 나름대로 장치를 해 놓고 상수도본부에서는 신용대출을 해 주고, 쉬운 말로.

○上水道事業本部長 朴鍾玉; 아니, 우리는 알선만 해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 給水部長 曹聖鉉; 저희가 받는 돈은 신용대출이나 마찬가지로
지입니다.
- 朴來雨 委員; 신용융자해 주는 거나 다름없지…….
- 給水部長 曹聖鉉; 융자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좀, 일단 분
납해서 받는 것입니다.
- 朴來雨 委員; 분납을 어떤 방식으로 받을 것입니까?
- 給水部長 曹聖鉉; 저희가 고지해서 받는 것입니다.
- 朴來雨 委員; 그러니까 수도요금에다가 고지를 같이 해서
다달이 받으니까?
- 給水部長 曹聖鉉; 별도로 할 계획입니다.
- 朴來雨 委員; 별도로? 1년에?
- 給水部長 曹聖鉉; 네, 1년에 한 번.
- 朴來雨 委員; 제 생각은 그냥 수도요금하고 같이 받았으면
좋겠는데, 수도요금으로 부과해서.
- 上水道事業本部長 朴鍾玉; 그것은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 朴來雨 委員; 왜 곤란합니까? 오히려 수도요금하고…….
- 上水道事業本部長 朴鍾玉; 현재 수도요금이라는 것은 계량
된 양에 따라서 부과하기 때문에 그것은 좀 곤란하겠습니다.
- 朴來雨 委員; 아니, 우선적으로 수도요금 부과하는 건물주
가 시설부담금 건물주 명시해서 건물주가 부담하니까 세 사
는 사람들은 별개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이 생각하기
에는 매달 나가는 수도요금을 부과해서 회수를 했으면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 上水道事業本部長 朴鍾玉; 그런데 지금 그 매달 나가기 때
문에 1년에 한 번 정도로 해서…….
- 朴來雨 委員; 1년에 한 번은 힘드니까 매달 어차피 수도
요금 낼 때 그런 방법도 생각 좀 해 보시란 얘기에요.

○上水道事業本部長 朴鍾玉; 그러면 10년이면 120번 분할해서 낸다는 얘기인데요. 그것까지는 우리가 생각 안해 봤습니다.

○朴來雨 委員; 그러면 아무튼 지금 100만원 정도 시설부담금을 지원해 주는 것은 아무튼 수요자들 신용 가지고 지원해 주네요?

○上水道事業本部長 朴鍾玉; 그런다고 봐야죠.

○朴來雨 委員; 그러면 그 예산확보는 지금 얼마나 됩니까?

○上水道事業本部長 朴鍾玉; 지금 있는 예산이 있기 때문이에요.

○朴來雨 委員; 아니, 그러니까 얼마나 되냐고요?

○給水部長 曹聖鉉; 給水部長입니다.

저희가 일단 아까 보고드렸던 것처럼 5,722개 동으로 현재 파악이 되어 있는데 저희가 이것을 제대로 시행하면 더 많은 대상이 있다고 보고, 그것이 한 30% 정도 금년 연내에 된다고 그러면 한 30억 정도를 저희가 공사비에 투입하면 될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朴來雨 委員; 그렇다면 은행에서 일시적으로 용자를 해 주는 것을 1년 동안 용자를 해 주고 더 못하겠다 하면 상수도 본부도 그대로 따라가야 되겠네요.

○上水道事業本部長 朴鍾玉;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저 은행에서 집만 잡히면, 저도 집을 잡히고 돈을 썼습니다만, 뭐 상품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알선하기에는 상당히 쉬울 것 같습니다.

○朴來雨 委員; 아니, 알선도 시도 때도 없이 한 1년이고 10년이고 5년이고 알선할 필요는 없고, 예를 들어서 지금 상수도본부에서 사업하는 것을 알선해 주었지만 금융기관에

따라서 상수도본부에서 지원해 주는 것도 중단될 수가 있다는 소리예요. 같이 해야 할 것 아닙니까?

○上水道事業本部長 朴鍾玉;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생각을 안 해 봤습니다.

○給水部長 曹聖鉉; 은행에 대한 얘기는 저희들이 은행하고 앞으로 협의해 나가면서 개발되는 상품의 성격에 따라서 앞으로 그것을 시행해 나갈 생각입니다.

지금 현재 몇 년 동안 하겠다든가, 이율을 얼마로 하겠다든가, 얼마를 하겠다든가 이런 것은 전부 결정된 것은 없고요. 앞으로 은행하고 저희 서울시하고 거래하고 있는 한빛은행, 이와 같은 은행을 통해서 앞으로 그런 상품을 개발해서 해 나가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조례안에 그 말은 들어 있지 않습니다.

○朴來雨 委員; 그 말은 안 들어 있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면 그 정도는 답변을 꼭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給水部長 曹聖鉉; 그런데 아직 그것을 은행하고 확실하게 저희가 그런 방법을 하겠다 해서 의향만 얘기됐지,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결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朴來雨 委員; 그렇다면 은행에서 금리를 비싸게 달라고 하면 못하는 것 아닙니까, 조례안 통과해 놓고?

○給水部長 曹聖鉉; 조례안에 그런 말씀이 없습니다. 위원님, 그러니까…….

○朴來雨 委員; 아니, 지금 그런 협의안을 안했다라도 은행에서 상품의 이자를 비싸게 달라고 하면 조례안 통과해 놓고 못할 것 아니냐 이 말이죠. 지금 방금 답변한 소리가 그 얘기 아닙니까?

○給水部長 曹聖鉉; 위원님, 은행용자에 대한 내용은 이 조

례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앞으로 시행하는 내용으로 보고드릴 것일 뿐이지…….

○上水道事業本部長 朴鍾玉; 지금 은행들이요. 지금 저희가 쓰고 있는 것이 9.76% 돈을 쓰고 있고 다른 은행은 집만 담보하면 9.35%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돈이 많고 적냐, 집만 잡히면 요새는 얼마든지 은행에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저희들이 조금 알선만 하면 그것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한 30억 내지 100억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朴來雨 委員; 차장님, 시원하게 말씀 좀 해 주세요.

○次長 金弘石; 朴委員님 질문하신 것 중예요. 저희가 지금 현재 문제가 되는 수도공사를 하는 곳 중에서 현재 골목길이 있는 배수관에서부터 계량기 있는 데까지 하는 것에 대한 것이 이 조례에 들어 있습니다. 그 공사비가 한 세대 한 100만원 정도가 든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지금 은행에 우리가 용자를 알선해 주겠다는 것은 그 계량기 있는 데까지만 관을 개량한다고 해서 그 집의 소출수가 완전히 해결되느냐, 그것이 아니고요. 옥내배관이 지금 노후되어 있고 옥내배관을 바꿔야 되는 것이 더 많은 비용이 듭니다. 어떤 집은 아마 한 몇 백만원, 1,000만원씩 이렇게 들 것인데, 지금 우리가 그 주민들한테 "옥내 계량기까지 인입관을 개량하면 소출수를 해소합니다" 하는 얘기를 하면 시민들은 곧 그것이 정말인 줄 알고서 그것만 개량하는데 동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실제로는 물이 잘 안 나옵니다. 안 나오는 것은 옥내배관이 지금 낡아서 물이 안 나오거든요. 그러면 시민들은 물이 잘 나온다고 해서 동의를 했는데 물이 안 나온다 그러면 시민들은 그 때 또 다른 불만을

터뜨립니다.

그래서 차제에 계량기까지 하는 데는 비용이 이만큼 드는데 이것은 우리 수도에서 한 10년 정도까지 분할상환을 하면서 이것을 공사하겠습니다 하는 것을 알려드리고요.

그 다음에 계량기에서부터 수도꼭지까지 옥내배관을 개량하는 데는 비용이 얼마만큼 들 것 같은데 이것은 순수하게 수요가 부담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돈이 없으면 은행융자를 알선해 드리겠다는 그 얘기입니다. 지금 給水部長 말씀드린 것이 그 얘기입니다.

○朴來雨 委員; 알아듣겠습니다만, 그 내부에 수도관에서 내부시설하는 것은 지금 은행에서 융자를 해 준다는 것 아닙니까? 은행에서 융자를 안해 준다면 못하는 것 아닙니까, 어차피 소출수를 해결하는 방법은 전체적으로 해야 하는데?

○次長 金弘石; 네, 그렇습니다.

○朴來雨 委員; 은행에서 융자를 안해 준다면…….

○次長 金弘石; 은행에 융자를 알선을 하면 은행에서는 될 것입니다.

○朴來雨 委員; 아니, 예를 들어서 알선이 안 되면 바깥 공사도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으로 봐서는?

○次長 金弘石; 그래도 훨씬 낫습니다. 우선 계량기까지라도 크게, 지금 가장 큰 것이 계량기까지 지금 집을 다섯 가구나 여섯 가구 다가구를 지으면서 이 비용을, 그러니까 공사비하고 시설분담금을 안 내기 위해서 옛날에 있던 관에다 그냥 공사를 해 놓고 가버렸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 부분을 크게 확대하고 옥내배관은 그것대로 또 확대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朴來雨 委員; 아무튼 지금 우리 수요가가 수도관 이전에도

부담하고 그런 꼴입니다. 옥내도 부담하고 다 부담하는 거예요.

○上水道事業本部長 朴鍾玉; 부담해야지요. 자기들 자기 수돗물 먹으려고 하니까 다 부담해야지요.

○朴來雨 委員; 둘 중의 하나는 상수도사업본부에서…….

○上水道事業本部長 朴鍾玉; 그것은 안 되지요. 우리 돈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한번에 100% 받는 것이 아니라, 10년이니까 한 10% 만 받고, 내년에도 한 10% 이렇게 하고, 옥내배관은 우리가 은행에 다 용자를 알선해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給水部長 曹聖鉉; 給水部長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예를 들어서 골목길에서 내 집으로 들어오는 관을 교체하는데 수요가가 돈을 내지 않게 되면 결국 서울시 전체 수요가가 그 집 개량하는 돈을 대신 내주는 그런 경향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골목길에서 내 집으로 들어온 것은 반드시 수혜를 보는 수요가가 돈을 내고 고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처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혹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90년, 91년, 89년에 조그마한 단독주택을 3층, 4층으로 집을 지었다 이겁니다. 내부배관을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委員長代理 金鎬一; 간단하게 대답하세요.

○朴來雨 委員; 지금 소출수 문제는 밖에는 상수도사업본부가 했는데 수요가가 안에서 소출수 문제가 된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까?

○給水部長 曹聖鉉; 아니, 그 뜻이 아닙니다. 제가 드린 말

은 아까 차장님께서 계량기까지 고쳤는데도 해 봐야 물이 안 나옵니다, 그 말씀이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다 이겁니다.

왜냐 하면 계량기까지 이것은 안 고쳤는데 집들을 고칠 때 사실 내부는 새로 고쳤기 때문에 어느 정도 깨끗합니다. 그래서 계량기까지 고치면 거의 해소가 된다면 얘기입니다.

아까 차장님께서 거의 안 되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委員長代理 金鎬一; 朴來雨 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李成浩 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成浩 委員; 李成浩 委員입니다.

여기 지금 조례가 전면 개정되다시피 해서 검토할 것이 많은데요, 오늘 바로 처리하기가 검토가 다 안 되어서 여러 가지 동료위원들의 지적도 있고 이것을 수용한다는 얘기도 있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검토해 볼 시간을 갖는 것이 어떨까라는 것을 위원장님께 제안을 드리면서, 몇 가지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직결급수가 있는데 시장이 개별 건축물별로 市長한테 신청해서 해야 하는 것입니까?

○給水部長 曹聖鉉; 給水部長입니다.

네, 맞습니다.

○李成浩 委員; 우리가 배수지를 만들고 하는 것이 직결급수를 할 수 있는 구역이나 지역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給水部長 曹聖鉉; 그러니까 서울시 전역에서 직결급수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추진하는 방향이.

○李成浩 委員; 아니, 지금 건축법 등이 개정되어서 건축물 내에 옛날에 있었던 탱크 같은 것을 안 해도 되도록 건축법

이 개정되었다는 얘기 아십니까?

○給水部長 曹聖鉉; 네, 그렇습니다.

○李成浩 委員; 그래서 직결급수할 수 있는 건축법상의 제약요인은 제거되었다는 얘기이고요. 다만, 서울시에서 직결급수를 할 수 있는 지역이 있고, 그렇지 않는 지역이 있단 말입니다, 수압의 차이 때문에.

○給水部長 曹聖鉉; 층수에 따라서 가능하고 안 가능한 것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李成浩 委員; 어떤 지역이라 하더라도 층수에 따라서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지요?

○給水部長 曹聖鉉;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뒤에 신고를 해야 된다 하고…….

○李成浩 委員; 그래서 어차피 건축물을 짓고자 하는 사람이 신청을 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어느 지역의 경우 해당되는 지역이 있고 해당 안 되는 지역이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給水部長 曹聖鉉; 제가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전체지역이 다 해당이 된다 이겁니다, 서울시 전역이.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시 전역에서 3층까지는 다 되고…….

○李成浩 委員; 지금 현 시점의 배수지가 지금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의 한 2/3 되었습니까, 용량의?

○給水部長 曹聖鉉; 한 절반 정도.

○李成浩 委員; 절반 정도. 그런데 그 상황에서 모든 시내가 다 된다고 그러면 어폐가 있는 것이고, 그러면 배수지 그만 지어도 되잖아요. 직결급수 다 해결되니까 현실적으로 수압의 문제나 등등을 종합해 볼 때 직결급수가 가능한 지역이 있을 것이고 그렇잖아요.

○上水道事業本部長 朴鍾玉; 전반적으로는 5층까지는 가능

합니다.

○李成浩 委員; 아니, 어떤 것이 맞는 거예요? 그냥 네 네 하지 마시고요.

○給水部長 曹聖鉉; 제가 말씀드린 것은 현재 저희가 3층 건물까지, 예를 들어서 주택 같은 거의 대부분의 건물들이 3층 주택 같은 것은 직결급수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적으로. 다시 말해서 개인주택은 지하 저수조나 이런 것 없이 바로 하는 그런 주택들이 많이 있습니다.

단지, 4층 이상의 건물들은 이 직결급수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신고가 되어서 저희가 검토를 해서 가능한 지역에서는 하고, 그게 가능하지 않는 지역에서는 어쩔 수 없이 현행 처럼 계속해 나가야 된다, 이런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요.

○李成浩 委員;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는 것이지요. 가능한 것, 가능하지 않는 것, 4층 이상의 구역의 경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지요, 그 얘기가?

○給水部長 曹聖鉉; 그래서 규칙에서 4층 이상만 신고토록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李成浩 委員; 그것도 규칙에 들어간다고요?

○給水部長 曹聖鉉; 네, 규칙에서 4층 이상만 신고를 하는 것으로.....

○李成浩 委員; 그리고 그것도 말씀하신 대로 되는 구역이 있고 안 되는 구역을 민원이 일일이 확인케 할 필요가 없이 그것도 규칙으로 정하더라도 고시를 해 주면 좋잖아요?

○給水部長 曹聖鉉; 그런데 그것이 더 오히려 혼란이 있을 수 있다고 저희는 보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각 번지에 호가 죽 있는데 저희들이 몇 번지 몇

호까지는 되고, 몇 번지 몇 호는 안 된다, 이렇게 나누어 놓으면 실제로 나누는 것도 물리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또 그것을 어디다 고시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고시한다는 것이 한계성이 있고 하기 때문에 전체가 다 가능한 것으로 하고, 그리고 4층 이상에 대해서 신고가 되었을 때 저희들이 그것을 서로수요가 부분을 해서 일단 수요가의 편리가 우선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李成浩 委員;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제 생각에는 그럴 가능성도 없는 것이 일일이 확인을 해야 되는 시점이란 말이에요. 현재는 배수지가 직결급수체계를 수립하는데 결정적인 요소라고 보여진다 말이지요.

이렇게 보면 배수지가 지금 기획하고 있는 양의 반절 정도밖에 안 되었다라고 한다면 말씀하신 대로 4층 이상의 건축물 중에 가능한 지역과 불가능한 지역이 있을 텐데, 불가능한 지역의 경우에는 굳이 또 확인을 해 볼 필요가 없을 텐데 확인케 하는 일도 있을 것 같아서 고시해 보는 것이 어떻겠나 싶어서 얘기를 드리는 것인데, 하여튼 그것은 그런 판단이 있을 수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알겠습니다.

그리고 요금조정위원회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요. 요금조정위원회가 하는 역할이 있는데 그것을 본부에다가 하나 설치하는 것이 낫습니까, 아니면 사업소별로 하는 것이 낫습니까?

○上水道事業本部長 朴鍾玉; 아까 金委員님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그것은 우선 이번에 삭제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李成浩 委員; 아니, 뭘 삭제를 해요?

○上水道事業本部長 朴鍾玉; 수도사업소에 위원회를 두는 것을 삭제를 하고, 만약에 꼭 필요성이 있을 것 같으면 이 다음에 개정할 때 넣도록 하겠습니다.

○李成浩 委員; 아니, 그러면 제7장 상수도요금 조정위원회 자체를 삭제한다는 말씀입니까? 왜요? 아니, 위원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렇게 따라야 하는 것입니까?

아니, 본부장님의 의견이 그렇게 소신 없이 왔다갔다하면 어떻게 해요?

○上水道事業本部長 朴鍾玉; 위원회에서 결정된 대로 또 金委員님 말씀도 일리가 있기 때문에…….

○李成浩 委員; 아니, 그래도 그렇지. 어느 정도 소신을 가지고 설명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설득을 할 것은 하고 하셔야지, 아무리 위원이 말씀하신다고 해서 그렇게 따르겠다고 하면 되나요?

○上水道事業本部長 朴鍾玉; 그렇게 따르겠습니다.

○李成浩 委員; 내가 볼 때는 상수도요금조정위원회가 사업소마다 있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요. 건축분쟁조정위원회 같은 경우도 구청마다 다 있어요. 구청에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건축분쟁이 충분히 있으니깐 그것을 서울시에 둘 것입니까? 건축허가권자도 그렇고, 과태료 부과권자가 구청장인데?

지금 요금부과권자가 수도사업장으로 되어 있습니까, 본부장으로 되어 있습니까?

○上水道事業本部長 朴鍾玉; 사업소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李成浩 委員; 부과할 수 있는 권한도 그렇고, 받는 것도 그렇고, 그렇게 본다면 사업소가 하는 것이 맞잖아요? 민원인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이것 아무리 본부에다가 해 놓으면

근거서류를 가지고 다른 공무원들이 생리적으로 왔다갔다해 주어야지, 얼마나 낭비요소가 많아요?

그리고 어차피 기능 자체가 심의대상이 계량기는 정상적인 데도 불구하고 평균보다 월등히 많이 나와 가지고 많이 부과 되어서 구제하려고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기능 자체가 구제하는 기능이면 가능한 한 빨리 가동되어서 결정할 수 있도록 그런 체제로 가는 것이 맞지요. 상수도요금조정심의위원회 역할이 그런 거잖아요?

○上水道事業本部長 朴鍾玉; 사실은 있는데 요, 그것을 법제화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요. 만약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정말로 법제화 할 필요가 있으면 이번에 개정된 대로 하고, 그 다음에 올리겠다는 얘기입니다.

○李成浩 委員; 그 얘기는 또 뭐예요? 법제화해서 조례안을 제출해 놓고,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가 뭐예요? 도대체 말씀을…….

○經營管理部長 朴喜秀; 經營管理部長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게 상수도요금조정심의위원회가 수도사업소마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내부적인 지침에 의해서 설치되어 있는 것을 사실상 조례상의 위원회로 만들기 위해서 이 안을 사실 올렸던 것입니다. 기능은 상수도요금조정심의위원회가 사실은 이러한 기능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李成浩 委員; 그렇지요. 그래서 지침보다는 조례화하는 것이 좋지요.

○經營管理部長 朴喜秀; 아까 金在實 委員님은 위원회가 너무 많은 판에 왜 위원회를 새로 신설하느냐 하는 그런 입장을 말씀하신 것이고, 우리는 이왕에 있는 위원회이니까 가능

한 한 법령상에 어떤 명확한 설치근거를 두자는 입장에서 저희들이 이번 조례개정안에 반영을 시킨 것인데요. 金在實 委員님께서서는 그렇지 않아도 위원회가 많고 위원회를 정비해야 될 위원회가 많은데 굳이…….

○李成浩 委員; 알겠는데요, 일단 그 안을 제출했으면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충실히 해 주셔야지요. 그리고 판단은 위원회에서 하는 것입니다.

시장이 제출한 제출안 입안의 취지, 그 의의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주시고, 결정은 어차피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안이기 때문에 의회의 어떻게 보면 고유권한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서 하는 것이지만, 입안을 해서 제출한 사람이 충분히 설명하고 소신을 가지고 얘기를 해 주는 것이 도리이고, 거기에 대해서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느냐, 또는 어떻게 결정하느냐는 우리 위원회가 알아야 할 일이에요. 그래야지, 자꾸 왔다갔다하면 위원회가 운영이 이상해져요.

○經營管理部長 朴喜秀; 현실적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李成浩 委員; 그래서 제 생각에는 개정안대로 하는 것이 나올 것 같다는 판단이 들어서 얘기를 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제출한 것에 대해서는 위원이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위원의 판단으로 그것은 나중 문제이고, 그 취지에 대해서는 성실히 설명을 드리고, 나중에 위원회 결정된 대로 따르겠습니다 하는 얘기하고, 또 그렇게 얘기하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하신다라고 하는 얘기는 다른 얘기입니다.

좋게 보면 위원님을 높게 생각해 주는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의회나 위원회에 대해서 불성실한 모습으로 비칠 수 있

어요. 그래서 주의말씀을 드리고요.

상수도요금조정위원회 심의대상에서 각호에 전부 해당하는 민원으로 한다 했거든요. 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 평균보다 월등하게 사용량이 격증한 경우, 계량기도 정상인 경우, 비정상적인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니까 정상의 경우가 되는 것이지요?

○經營管理部長 朴喜秀; 네, 그렇습니다.

○李成浩 委員; 그리고 수요가의 귀책사유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 그 다음에 조례의 위반유무, 조례를 위반하지 않았을 경우, 이런 얘기인데 그런 계량기가 비정상적일 경우에는 상수도요금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바로 결정이 됩니까?

○經營管理部長 朴喜秀; 어떤 원인에 의해서 요금의 월등한 차이가 있을 때는 이미 조정안의 기준은 다 있습니다.

○李成浩 委員; 심의를 안 거치고 바로 조정된다, 그것입니까?

○經營管理部長 朴喜秀; 네, 그렇습니다.

○李成浩 委員; 그리고 분담금하고 공사비하고 10년 분할이라는 것이 너무 긴 것 같아서 묻는데요.

수용가가 아까 말씀 중에 100만원에서 120만원 정도의 보통의 경우를 상정했을 때 수용가당 100만원에서 120만원 정도 부담하는 것을 10년 동안 그것을 납부한다고 그러면 100만원이나 120만원 되는 것을 1년이나, 하도 좋게 3년 하면 모르겠지만, 10년에 100만원을 계속 분할 납부해 간다고 하면 차라리 공짜로 해 주고 말지…….

○上水道事業本部長 朴鍾玉; 글썄, 그 이야기를 저희들 나름대로 수도사업소장들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현재 5,722

명이라는 분이, 물론 한 1만명 가까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굉장히 열악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왕에 해 주려면 한 10년 정도 해 주어서 부담없이 하는 것이 좋겠다, 또 내 부적인 공사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 사람들은 그 공사비까지 할 것 같으면 적어도 3.400만원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우리가 1년, 3년, 5년, 10년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한테 취사선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李成浩 委員; 그런데요. 100만원을 10년으로 나누면 이자까지 있겠습니까만, 빼고…….

(「이자 없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이자도 없어요?

○上水道事業本部長 朴鍾玉; 네.

○李成浩 委員; 그러면 1년에 10만원씩 갚는 것이고 한 달이면 1만원도 안 되는 돈인데 그 행정비용이 더 많이 드는 것 아니에요?

○上水道事業本部長 朴鍾玉; 행정비용은 좀 들기는 듭니다만, 어차피 지금까지 숙제를 이 차제에 풀어야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 1만가구 생각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내 부적인 시설공사비가 상당히 많이 들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 부담하려면…….

○李成浩 委員; 그것은 별도 문제고.

○上水道事業本部長 朴鍾玉; 그것을 할 것 같으면 그분들이 못한다는 얘기죠, 우리가 좀 많이 해 버리면.

○李成浩 委員; 아니, 그래도 100만원을 10년 동안 이자도 없는 것을 한달에 8,888원씩 그냥 부과를 하겠다는 것입니까?

○上水道事業本部長 朴鍾玉; 아니, 저희들은 그것을 1년에 한 번으로 부과하려고 합니다. 행정비용도 많이 들고 하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이면 100만원이면 1년에 10만원꼴 이렇게…….

○李成浩 委員; 아니, 그러니까 그 사람이 거기에 계속 거주하고 어찌고 하면 모르겠습니다만, 10년 사이에 무슨 일이 어떻게, 지금은 강산이 두 번 변하는 시대인데, 옛날에는 한 번 변했는지 모르지만. 10년이란 것이 너무 조금, 차라리 그냥 그 사람들 좀 열악하고 너무 영세민이라 그러면 아예 공사비나 부담금 부과에 있어서 별도의 예외조항을 만들어서 제도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낫지, 이것을 100만원 되는 것을 10년 동안 분할해서 한다는 것이…….

○上水道事業本部長 朴鍾玉; 그런데 영세민이라 할 수 없는 것이 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디 있든 간에 집도 뭐 한…….

○李成浩 委員; 집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10년 동안 분할 납부한다는 것은 좀 검토를 해 봐야 할 사항 같아요. 특별히 10년으로 해야 될 이유가 내부공사 외에는 별 이유가 없는 거 같아요. 그렇죠?

○上水道事業本部長 朴鍾玉; 내부공사도 들고…….

○李成浩 委員;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들이야 수돗물 잘 안 나오면 살겠어요? 이사 가겠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럴 수 있어도 두 가지인데 본 위원들끼리 판단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업무위탁을 하는데 있어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요. 이것은 아까 5년 동안만 하겠다고 했습니까?

○上水道事業本部長 朴鍾玉; 지금 생각으로는 5년 정도로

해 주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냐 하면 지금 1년 6개월이 50%만 잡더라도 3년 동안 이 사람들하고 뽏뽏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내년 12월까지 있는데 우리가 1년 6개월 동안 이 사람들을 50% 잡고 같은 것이 3년이 되고, 또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현재 이 사람들이 한 15%는 한다 하지만 자기들이 경리라든지 차량을 쓰고 한다 할 것 같으면 한 5%, 그렇기 때문에 한 80%밖에 못 받습니다. 그것을 한 3년 동안 안 올려 준다면 그것이 60%이기 때문에 1년 하고 한 3개월 되고 그렇다면 4년 3개월 정도가 뽏뽏이 돼요, 지금 받는 것하고 안 받는 것하고.

○李成浩 委員; 나 지금 우리 위원님들 무슨 말씀 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上水道事業本部長 朴鍾玉; 쉽게 이분들이 지금 현재 내년 연말까지는 돈을 받지 않습니까? 돈을 받은 것을 계산해서 지금 53%면 이 사람들이 다른 사람이 할 수가 있거든요.

○李成浩 委員; 아, 그러니까 그것도 좀 문제인데요.

본부장님, 그러니까 검침원들이 법인을 만들어서 그 사람들이 수의계약을 주는데 그 사람들은 법인을 만들어서 수의 계약해서 운영하고 있기는 하지만 서울시에서 내년 말까지는 월급을 준다 이 얘기입니까?

○上水道事業本部長 朴鍾玉; 그렇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李成浩 委員; 그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上水道事業本部長 朴鍾玉; 내년도에 그 사람들이 하든 안 하든지 검침을 안 나가면 내년 연말까지.....

○李成浩 委員; 아니, 공무원들 신분에서 공무원들로 법인을

만들어서 서울시 공무원 시설을 수의계약으로 맺었다 하는 애긴데 법적으로 가능한 얘기입니까? 사표 내고 나가야 되는 거죠?

○上水道事業本部長 朴鍾玉; 안 나갈 경우에…….

○李成浩 委員; 안 나갈 경우에는 그것이 안 되는 거죠? 법인 자체가 설립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해요?

○上水道事業本部長 朴鍾玉; 그러니까요. 그것을 가정해서 하는 것입니다.

○李成浩 委員; 차라리 그럴거면 내년 말 이후에나 기다렸다가 그 사람들 수의계약 주는 게 낫지…….

○上水道事業本部長 朴鍾玉; 그 사람들한테 뭐하러 수의계약 줘니까, 그냥 공고하면 53%면 하는데?

○李成浩 委員; 그러니까 지금 수의계약 주면 수의계약해서 그 사람 영업개시한 날짜부터 해서 그 사람 사표 내고 나가야죠?

○上水道事業本部長 朴鍾玉; 당연히 나가야죠.

○李成浩 委員; 그러면 그 사람들 월급 안 주는 거지, 자꾸 월급을 주는 얘기를…….

○上水道事業本部長 朴鍾玉; 아니, 기간을 말하라니까 그런 논리가 성립돼서 한 5년 정도는 해 줘야 이 사람들이 이익이 있으니까 나갈 것 아니냐 하는 이야기예요. 아, 그럴 것 아닙니까?

○李成浩 委員; 나는 지금 본부장이 무슨 얘기하는지 알겠는데 그러니까 법인 만들어서 그 사람 수의계약 주면 법인 만들어서 하는 순간 그 사람들 신분은 공무원 신분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고요.

○上水道事業本部長 朴鍾玉; 당연하지…….

○李成浩 委員; 그 사람들이 수의계약받은 금액대로, 어떻게 서울시로서는 그 동안에 있었던 검침원들이 구조조정 와중에서 나가게 됐으니까 그것 생각해서 수의계약 해 주는 것으로서의 임무를 다 하는 거예요.

○上水道事業本部長 朴鍾玉; 수의계약을 해 주되 적어도 한 4년 이상은 해 줘야 한다는 얘기에요.

○李成浩 委員; 아니, 그러니까 4년 내지 5년은 해 줘야 한다는 얘기죠. 들어보세요.

그 다음에 수의계약을 해 주는데 아까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수의계약할 수는 없는 것이니까 과연 적정기간이 얼마나, 이것을 계산해 볼 때 그것을 5년이라고 하시길래 본위원이 물은건데, 보통 수의계약하거나 또는 계약할 때 3년으로 하지 않아요? 1년 계약을 맺되 2회에 한해서 연장해서 3회 3년 동안 끊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나요? 그리고 나서 그 이후로 바로…….

○上水道事業本部長 朴鍾玉; 그렇게 하면 안나갈 것 아닙니까? 내가 가만히 있어도 3년 동안 할 수 있는 돈을 받는데…….

○李成浩 委員; 안 나가면 다른 사람들이 들어 올 것 아니에요. 없어요? 지난번에 상당히 경쟁이 치열했다고 하던데?

○上水道事業本部長 朴鍾玉; 어디요?

○李成浩 委員; 강동하고 강남하고 할 때?

○上水道事業本部長 朴鍾玉; 그렇게 하더라도요…….

○李成浩 委員; 그렇게 하면 되지 우리가 아쉬울 게 뭐 있어요?

○上水道事業本部長 朴鍾玉; 아쉬울 것까지는 없지요. 그런데 이분들이 그렇게 함으로써 고용안정을 기하고 또 실질적

으로…….

○李成浩 委員; 아니, 그것 생기면 다른 사람들이라도 고용 안정돼요.

○上水道事業本部長 朴鍾玉; 그 사람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李成浩 委員; 그 일이 없어지지 않는 한 누군가는 와서 일을 한다니까. 꼭 그 사람들이 일해야 고용이 안정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上水道事業本部長 朴鍾玉; 그 사람 자체로서는 검침원들 안정되지 않습니까?

○李成浩 委員; 그러니까 다른 얘기를 하자고요.

그러면 3년이 됐든 5년이 됐든지에 대해서는 본부장님 말씀들었고 위원들하고 상의를 해 볼게요. 그 때도 불러서 상의해 볼 테니까 그 정도로 하고, 다만 어쨌든 1회에 한해서 수의계약할 수 있다라고 고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거죠?

○上水道事業本部長 朴鍾玉;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제 입장에서 그것 생각해 본 적이 없으니까. 하여튼 5년 정도 해주면 적당하지 않겠느냐…….

○李成浩 委員; 그러니까 5년 정도 한해서 1회 하는 것으로 적당하지 않느냐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지금?

○上水道事業本部長 朴鍾玉; 한 번이죠.

○李成浩 委員; 본부장님, 잘 들어요.

○上水道事業本部長 朴鍾玉; 나는 또 그것 해 주고 또 해 준다는 그런 이야기는 아니고요.

○李成浩 委員; 1회에 한해서 수의계약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거죠? 조례개정하는 데 동의하는 거죠?

○上水道事業本部長 朴鍾玉; 네.

○李成浩 委員; 이상입니다.

(金鎬一 幹事, 金鍾來 委員長과 司會交代)

○委員長 金鍾來;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金興植 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興植 委員; 金興植委員입니다.

아까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지금 3층 정도의 직결급수가 몇 %, 조사한 것이 45%라고 했나요?

○給水部長 曹聖鉉; 아니, 그게 아니고요. 배수지를 통해서 급수하고 있는 지역이 서울시 전체 지역 중에서 한 45% 정도 된다…….

○金興植 委員; 그러면 현재 입장에서 직결급수할 수 있는 %는 파악을 못했습니까?

○給水部長 曹聖鉉; 네, 그것은 저희가 세부적으로 아직 조사가 안 되어 있습니다.

○金興植 委員; 그러면 계획도 없이 어떻게 직결급수를 한다고 자꾸 목표를 정하고 있습니까? 아니, 몇 년도 며칠까지 계획이 서 있지요?

○給水部長 曹聖鉉; 네.

○金興植 委員; 그런 계획이 어떤 근거가 없이 어떻게 서 있냐고요?

○給水部長 曹聖鉉; 저희가 지금 목표를 그 층수까지는 그 연도에 권장을 해서 유도를 하겠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金興植 委員; 유도만 한다고요?

○給水部長 曹聖鉉; 이것이 수요가가 동의를 해야만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수요가가 원하지 않으면 안 되는…….

○金興植 委員; 아까 좀 전에 말씀하셨는데요. 아까 계량기 전에 공사를 하는 것, 관 확대공사라든가 관 개량공사하는데 그 들어가는 공사비용을 그 수요가가 내지 않으면 전체의 서울시민이 다 내는 폭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給水部長 曹聖鉉; 네, 그렇습니다.

○金興植 委員; 그러면 우리가 송수관, 배수관, 급수관 이런 체계가 되어 있지요, 지금 관이?

○給水部長 曹聖鉉; 네.

○金興植 委員; 그러면 송수관도 그렇고 배수관도 그렇고 그런 논리가 적용되네요? 배수관도 만들 때는 배수관 그 혜택을 보는 지역 사람들이 돈을 내야 되고, 송수관을 물을 때는 송수관 그 지역사람들만이 돈을 내야 된다 그런 결론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따지자면?

○上水道事業本部長 朴鍾玉; 원래 시설분담금이라는 것은 그런 것을 다 같이 부담하자 해서 시설분담금이 생긴 거거든요. 그러니까 논리는 맞습니다.

○金興植 委員; 아니, 지금 그렇게 서울시 상수도본부에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냐고요?

○給水部長 曹聖鉉; 지금 저희가 방금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간, 간선시설에 대해서는 시설분담금제도에 의해서 시설분담금을 가지고 죽 시설을 해 왔던 것입니다.

○金興植 委員; 그런데 지금은 무슨 관까지만은 수요가가 물어야 됩니까?

○給水部長 曹聖鉉; 급수관요. 다시 말해서 골목에서 자기 집으로 들어오는…….

○金興植 委員; 그러면 급수관을 분기할 때 규정이 있지요? 몇 mm는 수전 계량기가 몇 개 달려야 된다, 원칙이 있지요?

상수도본부에서 허가 내줄 때 그 규정을 지켜서 해주었습

니까? 20mm 급수관이 묻혀 있을 때는 13mm 수전 계량기가 몇 개 달려야 된다는 원칙이 있지요?

○給水部長 曹聖鉉; 네, 그렇습니다.

○金興植 委員; 그러면 그 원칙에 의해서 공사를 해 주었나 이거죠.

○給水部長 曹聖鉉;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습니다.

○金興植 委員; 해 왔어요? 만약 안 되어 있으면 책임지실 거예요?

○給水部長 曹聖鉉;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예를 들어서 저희가 골목길에 80mm 관이 부설되어 있으면 거기서 부터 20mm 관을 예를 들어 한 5개를 분기한다든가 이렇게 한 다 이겁니다. 그런데 만약의 경우 그것이 80mm를 초과할만큼 많이 분기가 되었으면 저희들이 바로 큰 걸로 개량하고 있습니다.

○金興植 委員; 그게 아니고요. 80에서 20mm 관이 들어갔을 때는 몇 년 동안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전에 분기확인서라 해서 동의를 받았지요, 수요가들한테?

지금은 말하자면 건축허가 났을 때는 거기에 들어간 용량을 따져서 공사비를 부담해야만이 허가를 해 주죠?

○給水部長 曹聖鉉; 네, 그렇습니다. 공사를 해 줍니다.

○金興植 委員; 그러면 어떠한 수요가 한 사람이 현재 새로 집을 지었을 때는 골목에서 수도물이 원활하기 위한 그 공사가 규격이 맞아야만 해 주죠, 그 관이?

○給水部長 曹聖鉉; 만약 관이 부적합하면 저희들이 그것은 다시 또 큰 것으로 갈아서 맞추어서 해 나가고 있습니다.

○金興植 委員; 맞추어서 하는데 그 공사비를 누가 내느냐고요?

○給水部長 曹聖鉉; 큰 관 말씀입니까?

○金興植 委員; 네.

○給水部長 曹聖鉉;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간선에 대해서는…….

○金興植 委員; 제가 묻는 말씀은요, 그 전에 20mm 관을 예를 들시다. 20mm 관이 골목에 묻혀 있는데 20mm 관에서 우리가 가정집을 13mm로 따져서 한 열 집을 묻게 되어 있는데, 만약에 20개가 달려 있어 물 사정이 나쁠 경우에 큰 것으로 다시 물어야지요. 그런데 그것을 수용가 보고 부담하라, 아까 그런 말씀 아닙니까?

○給水部長 曹聖鉉; 아닙니다. 그 큰 것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간선시설이기 때문에 저희 서울시에서 부담해서 개량을 합니다.

○金興植 委員; 그러면 몇 mm까지를 기간시설이고…….

○給水部長 曹聖鉉; 구경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 집으로 들어오는 관, 나만 쓰는 관을 급수관이라고 그러고요. 그래서 그것은 수용가가 돈을 내야 한다는 뜻이고, 여러 사람들이 쓰는 관을 베이스관이라고 합니다. 그 베이스관은 저희 서울시가…….

○金興植 委員; 서울시에서 다 해 주고요?

○給水部長 曹聖鉉; 그렇습니다.

○金興植 委員; 그런데 지금 강북구의 경우에 지역을 말씀드려서 안 되었습시다만, 강북구에서 민원이 들어와서 서울북부사업소에 내면 밖의 수압은 좋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한다고요. 그러면 수용가들이 이유 없이 진정을 낸 것이 아니거든요.

지금 강북에는 난리입니다, 지금 물이 안 나온다고 해서.

그래서 이번에 각 동장을 통해서 일제히 조사를 하라고 했어요.

해서 수도사업소에 내라고 그랬는데, 그렇다면 만약에 계량기를 예를 들어서 20mm를 달아주어서 물의 사정이 좋았을 때에는 만약에 계량기 그 용량이 적어서 그 가정에 물의 수압이 나쁠 것 아니냐 하면, 그것을 조치하라든지 이렇게 권장을 한다든가, 또 계량기 뒤에 보면 또 그것을 차단시키는 망이 있지요. 망에 보면 또 단말지역이라 이 망에 보면 더러운 것이 많이 끼여 있어요. 이것을 직접 수도사업소에서 나가서 소제를 해 준다든가 그 어떤 대책을 강구를 해 주어야 하는데, 지금 강북지역을 볼 것 같으면 상수도 문제하고 가스 문제, 이 두 가지 민원이 제일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아마 다른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이 문제를 가지고 위원장 회의석상에서 논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부장님, 들어 봤습니까? 시장님한테 직접 얘기해서 시장님한테 답변을 받아냈다고 하던데?

○上水道事業本部長 朴鍾玉; 그 이야기는 안 들었습니다만 지난번에 시장님이 구청에 가실 때 그 이야기를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金興植 委員; 아니, 다른 상임위원장이, 강북구 출신 위원장이 그것을 상당히 어필해서 만약에 이것이 안 되면 추경할 필요도 없다고 그렇게까지 말씀을 하셨어요.

○上水道事業本部長 朴鍾玉; 좀 해 달라고, 강북이 어렵기 때문에…….

○金興植 委員; 좀 해 달라고가 아니라 강북에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지경에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얘기를 하면 저번에 우리 간담회 때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 上水道事

業本部長님이 창동에 계시면서 강북구 분들도 모르시냐고 내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여기서 급수부장이 아마 전화로만 그냥 북부수도사업소에 연락을 할 거예요. 실지 나가서 한번 체험을 해 본다든가, 검토를 해 본다든가 해서 그 지역주민들에게 해소시켜 주어야 합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朴鍾玉; 네, 이번에는 제가 직접 나가겠습니다.

○金興植 委員; 좀 해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제가…….

○上水道事業本部長 朴鍾玉; 참말로 내가 나갑니다.

○金興植 委員; 내가 이번에는요, 특별히 조사위원회까지 구성해서 해 보려고 합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朴鍾玉; 네, 알았습니다.

○金興植 委員; 왜냐 하면 민원을 넣어 주면 우리가 알지 못해서 그런지 사업장이 뭐라 하느냐 하면 "수압이 밖에는 좋습니다" 이런 답변밖에 없어요. 실지 나쁘기 때문에 나쁘다 이거예요. 좋은 물을 나쁘다고 하겠습니까?

○上水道事業本部長 朴鍾玉; 그러니까 제가 위원님 모시고 나가겠습니다.

○金興植 委員; 아니, 저는 못 가지요. 이번에 거기 수도사업소에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러면 어느 지역이 나쁘냐고 나보고 묻지 말고 각 동장님한테 파악해서 올릴테니 구청에, 구청장을 만났어요. 전부 해서 전부 올렸대요, 북부수도사업소에다가. 어느 동에는 몇 가구가 어떻게 되고 하는 것을 전부 올렸으니 파악을 해 보세요.

○上水道事業本部長 朴鍾玉; 네, 알았습니다.

○委員長 金鍾來; 네, 수고하셨습니다.

宋美花 委員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美花 委員; 본부장님 조례가 올라왔는데 여기에 의무나 관리, 이런 것에 대해서 의무조항이 있습니까? 어떠한 것은 해야 된다, 시설과 관련 없습니다.

지금 이게 1장 총칙, 2장 급수공사, 3장 급수, 4장 요금, 5장 관리, 이렇게 해서 죽 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우리 상수도 사업본부의 의무규정이 있습니까?

맑은 물을 공급해야 된다, 뭐뭐 하기 위해서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해야 된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上水道事業本部長 朴鍾玉; 이것은 전반적인 법규정이 선량한 관리자로서 해야 한다는 의무규정이 전체적으로 포함되어.....

○宋美花 委員; 조문으로 명시되어 있습니까, 없습니까?

○上水道事業本部長 朴鍾玉; 명시되어 있는 부분은.....

○經營管理部長 朴喜秀; 經營管理部長입니다.

그런데 조례상에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없고요, 우리 수도의 기본법인 水道法에서 수도사업자의 의무에 관한 그런 사항이 포함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宋美花 委員; 네, 水道法은 이 자리에서 살펴볼 수 없기 때문에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수도조례안에는 없는 거지요? 명시되어 있지 않고, 그러니까 명문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5장 관리에 보면 급수사용자 등의 의무 해서 일반적으로 수용가들에게 그 의무사항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 의무사항을 이번에 강력하게 신설을 해 놓았습니다.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 놓았어요. 맞습니까? 제5장제30조입니다, 급수사용자 등의 의무.

○經營管理部長 朴喜秀; 개정안의 제29조이지 요?

○宋美花 委員; 제28조입니다. 급수장치 등의 관리책임 등 해 가지고 나왔습니다.

○給水部長 曹聖鉉; 給水部長입니다.

그래서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

○宋美花 委員; 아니, 아까 말씀하신 것 하지 마시고…….

○給水部長 曹聖鉉;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것은 인정을 하고, 위원님들께서 그것을 시정해 주시면 저희들이 동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2항에 대해서.

○宋美花 委員; 2항에 대해서요?

○給水部長 曹聖鉉; 네, 그 선량한 주의의무를 구체화해 놓았던 2항이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전에 또 위원님이 지적하셔서 저희들이 말씀을 그렇게 드렸습니다.

○宋美花 委員; 좋습니다.

그러면 소방시설을 할 때 지금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지금까지 허가제로 하면서 무슨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신고제로 바꾸셨나요?

○給水部長 曹聖鉉;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宋美花 委員; 소방연습할 때 사설소화전 사용할 때 말씀입니다.

○給水部長 曹聖鉉; 네, 사설소화전을 허가를 신고로 바꾼 것은 허가는 좀더 어려운 절차이기 때문에…….

○宋美花 委員; 그러니까 지금까지 어떤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완화하셨냐고요?

○經營管理部長 朴喜秀; 經營管理部長입니다.

허가제를 신고제로 바꾼 그 기본적인 취지는 허가라는 것

은 일단 신청이 있으면 행정관청의 승인이 필요했던 사항인데, 사실상 이것이 저희들이 운영을 해 오는 과정에서 허가까지 필요 없을 것 같더라, 그 신고만 받아서 신고만 받으면 저희들이 사설소화전에 대한 연습사용을 확인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허가제를 신고제로 바꾼 사항입니다.

○宋美花 委員; 그러니까 허가나 신고나 특별히 여러 가지 문제는 없는 거지요? 허가제로 하나 신고제로 하나 특별히 규제사항도 없는 것이고요?

○經營管理部長 朴喜秀; 그런데 허가제로 하면 반드시…….

○宋美花 委員; 그러니까 절차가 복잡하다는 그것뿐인데, 그러면 종전 규칙이니까 현행 조례에는 지금 1회 10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그랬는데 이 부분을 삭제하는 이유는 뭔가요?

○經營管理部長 朴喜秀; 그것을 연습용으로 사용할 때 저희들 조례규정에 1회 10분 규정이 있는데, 저희들 운영하는 과정에서 10분이라고 제한을 둘 필요가 있느냐. 특별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것을 연습사용을 하는데 10분이라고 제한할 필요가 있겠느냐 해서 사실 없었습니다.

○宋美花 委員; 어떤 특별한 문제가 있어서 없앤 것은 아닙니까?

○經營管理部長 朴喜秀; 운영상의 불필요한 표현 같아서 내용을 삭제했습니다.

○宋美花 委員; 그러면 3장 급수 개정안에 대해서 제14조 제5항입니다. 5항 하단을 보면 정확히 계량이 안 된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계량기의 구경을 변경할 수도 있다고 그랬는데 이변경하는 부담은 그러면 시민들이 내는 건가요?

○經營管理部長 朴喜秀; 저희들이 부담합니다. 우리 본부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宋美花 委員; 그러면 이 계량기가 불량계량기거나 계량이 제대로 체감 못하거나 이런 판단이 서야 되는 거네요, 이부분은?

○經營管理部長 朴喜秀; 이 사항은요, 저희들이 위원회에서 업무보고시 가끔 드립니다만, 구경 축소를 저희들이 보고드리는데 이 근거조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계량기가 설치되었는데 사실상 물 사용량이 설치된 계량기에 비해서 현저하게 사용량이 낮을 경우에는 계량기를 계측할 수 있는 상당히 오차가 많이 생깁니다. 그러한 건물의 경우에는 그 사용량의 적정한 구경의 계량기로 교체를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宋美花 委員; 그러면 제가 일반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에 1인당 수도물 사용량이 증가를 하고 있는데, 그 수도 사용량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경우도 많나요? 그래서 계량기를 교체해야 될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하나요?

○經營管理部長 朴喜秀; 네.

○宋美花 委員; 그것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經營管理部長 朴喜秀; 그것은 계량기의 설치기준이 이렇습니다.

계량기의 설치기준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계량기를 설치할 때는 수도물 사용량을 모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계량기 구경을 어떻게 결정하느냐 하는 문제는 그 시설의 용도가 어떤 용도냐, 그것을 판단을 해서 그 시설의 용도와 그 시설의 건축 연면적을 기준으로 해서 계량기 구경을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계량기를 설치해 놓았는데 실제로 이것을 건물이 수도물을 사용하는 과정에서는 어느 정도 계량기별로

출소하는 양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이 건물의 용도로 연면적을 기준으로 해서 계량기 구경을 정해 놓았는데 실제로 사용하는 것은 그 구경에 비해서 현저하게 낮게 사용한다, 그런 건축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구경을 낮추어서 다시 교체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宋美花 委員; 이렇게 교체대상인 계량기들이 많이 있습니까?

○經營管理部長 朴喜秀; 저희들이 위원회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전체 190만 수전 중에서 저희들이 일제조사를 했는데 한 4만 3,000전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宋美花 委員; 그러면 옛날 건물이겠네요? 용도가 변경되었거나, 아니면 연면적에 비해서 시설량이 떨어졌거나 하면 오래 된 건물이겠네요?

○經營管理部長 朴喜秀; 네, 그렇습니다.

○宋美花 委員; 오래된 건물을 이것을 이렇게 조례까지 만들어 가지고 할 필요가 있나요? 새로 건물을 짓거나 토지이용면에서 어차피 다르게 활용을 하려고 할 텐데요, 자기 재산상의 입장에서.

아니, 이렇게 조례로 명시할 만큼의 여러 가지 주민과의 관계라든가 사유라든가 이런 것들이 발생이 되느냐, 이런 말씀이에요.

○上水道事業本部長 朴鍾玉; 그렇습니다. 발생하기 때문에 그것은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나 규정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적정한 수도계량기를 달려면 주인이 반발할 것 아닙니까? 더 수도요금에 많이 나올 것을 예견을 하고, 그럴 경

우에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번에…….

○宋美花 委員; 계량기를 바꾸면 수도요금이 더 적정하게 나오지 않아요, 왜냐 하면 지금 계량기가 큰 것이기 때문에.

○上水道事業本部長 朴鍾玉; 잘 안 들어가거든요.

○宋美花 委員; 그러니까 더 조금 나오지요.

○上水道事業本部長 朴鍾玉; 그렇지요. 우리는 더 많이 나오게 하려고…….

○宋美花 委員; 그 사용량을 더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해서 계량기를 바꾸시겠다는 이런 말씀이지요?

○上水道事業本部長 朴鍾玉; 네, 맞습니다.

○宋美花 委員; 그러면 좋습니다. 그렇게 수입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시는 분이 지금 요금을 취득일 10일 전에 사업소장에게 신고할 경우에는 요금을 분리해서 할 수 있도록 한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하면 저희 시 수입 같은 데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일어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이게 개인별로 쫓아다니면서 고지서를 낼 수 없지 않습니까? 주민등록상에 해서 내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저희 체납액이 계속해서…….

○上水道事業本部長 朴鍾玉; 조금 늘어날 것입니다.

○宋美花 委員; 조금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되면 체납 고지서가 굉장히 많이 되는 것이지요.

○上水道事業本部長 朴鍾玉;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조금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지만, 저희들이 더 열심히 해서 봐드리고, 시민한테 서비스를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宋美花 委員; 어쨌든 이것은 대시민 서비스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상수도사업본부의 요금징수 이 쪽에 있어서는 굉장히 많이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經營管理部長 朴喜秀; 저희도 그런 점에 상당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宋美花 委員; 요금징수가 해마다 그렇게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정호수는 뭔가요? 정호수와 수도를 같이 사용하는 경우라고 했는데.

○上水道事業本部長 朴鍾玉; 지하수요. 쉽게 말해서 우물입니다.

○宋美花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鍾來; 李松竹委員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松竹 委員; 조금 의문점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 4페이지에 보면 3의 제1항 중간쯤 보면 노후관 개량사업을 시행하는 지구 안에서의 급수장치 개량공사와 수요자 신청에 의한 노후된 급수장치의 개량공사에 있어서 계량기까지의 급수장치 개량공사에 대한 공사비는 여기 전부 또는 일부를 시에서 이를 부담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전부는 얼마를 의미하고 일부는 얼마만큼 의미하는지, 이것 애매모호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답변 주십시오.

○給水部長 曹聖鉉; 給水部長입니다.

노후관 개량사업을 하는 지역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어떤 지역 한 군데 전체를…….

○李松竹 委員; 아니, 제 질의의 답변을…….

○給水部長 曹聖鉉; 아니, 그러니까 그것부터 설명을 드려야 얘기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한 골목을 저희가 전부 파고 공사를 하게 됩

니다. 그러면 공사를 전부 골목을 파고 공사를 하는데 거기서 각 가정으로 들어가는 관들이 이렇게 죽 있습니다. 그 가정으로 들어가는 관들을 아까 몇 번 저희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수요가가 돈을 내고 그것은 고쳐야되는데 노후관 개량 공사를 하기 위해서 이미 땅을 다 파 놓고 하는데 수요가가 돈을 안 냈다고 해서 그것을 개량을 안하고 다시 덮어버리면 언젠가는 또 다시 그것을 해야 되는 국가적으로 자원을 낭비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이 일부, 다시 말해서 수요가가 돈을 안 내도 먼저 공사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열어 놓기 위해서, 수요가가 돈을 내야만 공사를 하는 것인데 시장이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해서 할 수 있다는 것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李松竹 委員; 그러면 이 조항이 골목을 헤쳐서 공사를 하는데 수요가가 돈을 무조건 못 내겠다 하면 어느 지역이든지 시에서 다 내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給水部長 曹聖鉉; 그러니까 노후관 개량 구역에 대해서 저희가 땅을 판 데에 대해서는 수요가가 내겠다 안 내겠다에 관계없이 전부 다 저희가 그냥 해 줍니다, 그런 의향은 묻지도 않고.

○李松竹 委員; 그러면 전부 다 낸다고 해야지, 전부 또는 일부를 시에서 이를 부담한다, 그러면 전부 또는 일부라는 것을 왜 붙였어요?

○給水部長 曹聖鉉; 그러니까 저희가 그것을 어떤 일부분을 시에서 부담할 수도 있고, 전부를 부담할 수 있는 그런 융통성을 열어 놓은 겁니다.

○李松竹 委員; 융통성이 아니고 형평성에 이것은 맞지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공사가 있을 때는 수요가가 내는 의무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한 지역에는 수요가가 다 내고 어느 지역에는 수요가가 못 낼 경우에는 시에서 내고 그러면 그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이죠. 그렇지 않아요?

○給水部長 曹聖鉉;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미 노후관 개량사업을 하면서 땅을 다 파 봤는데 그것을…….

○李松竹 委員; 그렇지요. 다 파 봤는데 전체적으로 파 놓은 데가 한 두 군데가 아니고, 딱 한 지역으로 국한되었다면 이것이 맞는 것인데 어차피 수도개량공사를 전 지역에 해야 되는데, 물론 한 지역도 있고 안한 지역도 있지만 개정조례안에 의하면 수요가가 해 놓고 못 내겠다 하면 서울시에서 다 해 준다는 의미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수요가가 낸 지역과 안 내는 지역에는 형평성이 맞지 않다 이겁니다.

○給水部長 曹聖鉉;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형평에 다소 문제가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그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다 땅을 파서 공사를 하면서 수요가가 돈을 안 내고 한다고 그래서 다시 그대로 놔두고 그냥 다시 포장까지 해 버린다고 그러면 그것이 국가적인 낭비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문제는 있으나, 이것은 사업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시장이 일부 부담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李松竹 委員; 아니, 그런데 다른 데는 뭐 공사를 해 놓고 10년 상환 이런 것도 있는데, 그러면 안 낸 수요가에게는 어떤 기일을 줘서 그때까지 내라는 것이 마땅한데 어떤 지역에는 다 내고 어떤 지역에는 요즘 그렇잖아요. 이기주의자들 못 내겠다 배짱 내밀고 데모하고 이런 데는 안 받아도 되고, 순순히 선량한 주민들이 사는 데는 전액을 내야 된다는

것 정말 형평상 안 맞잖아요? 안 그래요? 우리 차장님이 한 번 설명해 보세요.

○次長 金弘石; 次長 金弘石입니다.

지금 노후관 개량공사를 하는 지역하고 안하는 지역을 구별을 해 놓은 뜻이 되겠습니다.

노후관 개량을 하는 지역은 그 골목길을 전부 다 노후관 개량을 한다고 골목길을 파 놓고 있는 경우거든요. 그러면 노후관 개량한다고 그 골목길을 파 놓고 있고, 거기서부터 분기된 인입관 이것이 노후돼 있을 때는 원래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각각 수요가에서 비용을 부담해야 그 배관을 개량을 해 주도록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노후관 개량하는 지역은 기 파냈기 때문에 거기에서 조금만 더 파면 바로 관을 개량할 수 있고, 그렇지 않고 만약에 그것을 그냥 연결해서 물어버리면 다음에 다시 파서 해야 되니까 그것은 국가로서는 비용이 많이 나가니까 골목길 하나하나 파서 수요가가 신청하는 경우에 새로 연결해서 묻으면 많이 나가기 때문에 지금 그것을 국가 전체로서는 비용을 줄이자는 뜻에서 해 놓은 것입니다.

○李松竹 委員; 그건 하나의 말의 의미는 어느 정도 알겠어요. 그것을 몰라서 질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형평성에 절대 맞지 않다 이겁니다. 앞으로 이것을 재장치를 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다 같이 어느 골목이든지 서울시 전체가 일률적으로 형평에 맞아야지, 어느 골목에는 파 냈기 때문에 그냥 해 주고 어떤 골목은 파 냈어도 그 지역주민들이 순순히 돈을 내냈을 때는 받는 것이고 안 내놓으면 시에서 내는 것이고, 그런 경우가 발생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지금 현 사회에 이기주의자들과 목청 높은 사람이 결국은 이긴다는 그런 지금 현 사회에 큰 역할을 해 주시네요, 수도사업본부가. 안 그래요?

절대 우리 서울시민들이 좀 양심을 가지고 제대로 살게 하기 위해서는 공무원들이라든가 앞선 사람들이 잘 해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이런 조항 때문에 이기주의자들이 더 발생을 한다, 그러니까 이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하고 싶네요.

○宋美花 委員; 형평성에 문제도 있지만 도시가스공사 같은 것 할 때는 그렇게 안하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구역이면 구역별로 다 이것 받아서 좀 연기되더라도 서로 주민들끼리 언제까지 하자, 뭐 어렵더라도 하다못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용자를 내서라도…….

○次長 金弘石; 도시가스는 신규공사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죠.

○宋美花 委員; 그러니까 금년까지 예를 들어서 은평구에 2-3지역 이 쪽의 노후관에 대해서 하겠다, 이것이 어떤 품은 아니지만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지금 어떤 무임승차하는 그런 것들은 좀 방지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上水道事業本部長 朴鍾玉; 도시가스는 그런 것이 없을 겁니다만, 우리 수도는 오래 되었기 때문에. 도시가스는 거의 없습니다.

○宋美花 委員; 거기에도 도로를 한 번 팔 때 또 파고 파고 하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합의를 받아서 이번에 여기 공사를 하겠다 그러면 어느 가구 신청해라, 그래서 나중에 신청하는 집은 또 자기네 집까지 들어오는 관 또 다시 그 비용까지 부담을 하니까 할 때 한꺼번에 같이 하자.

이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給水部長 曹聖鉉; 給水部長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이 형평성 측면에서는 아주 타당한 얘기입니다. 단지, 저희가 노후관 개량사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입장에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방법으로 하면 단 한 지역도 못합니다. 다시 말해서 거의 시민들이…….

○李松竹 委員; 더 이상 계속 반복된 답변은 그만하시고요.

이것을 조항을 좀 바꿔야 됩니다. 형평성에 맞게 해야 되고, 물론 이렇게 해 줘야만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한다는 것은 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절대 공평해야 됩니다, 어느 지역이든 간에. 그래서 공사를 해 주고 하기 전에 충분한, 귀찮으니까 아, 그거 해 주자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정말 설득을 하고 이 지역에 뭔가 지역주민들이 단합이 안 되었을 때는 그 지역의 대표를 가지고 5년이든 3년이든 1년이든 시일을 줘서 받아내는 방법을 취하셔야지, 어느 골목에는, 계속 반복된 말씀입니다만, 어느 골목에는 100% 돈을 내고 어느 골목에는 한 푼도 안 내고 하는 그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본부장님, 시간 없는데 계속 이것 가지고 말씀드리지 않겠는데 전부 또는 일부라는 것은 전부로 고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鍾來;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오늘 질의답변 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의 견해와 또 집행부의 견해가 많이 상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의견을 정리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議事棒 3打)

(19時 15分 會議中止)

(19時 16分 繼續開議)

○委員長 金鍾來;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議事棒 3打)

정회 도중에 동 조례안은 현행조례에 대해 전문 개정하는 안건으로써 오늘 질의답변을 통해서 심도 있고 또 우리 위원님들의 깊은 견해를 말씀하셨습니다만, 上水道事業本部和 우리 위원님들의 견해가 많이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조례안에 대해 심사를 보류하자는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우리 위원 여러분, 본 개정조례안을 심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特別市水道條例改正條例案은 좀더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해서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議事棒 3打)

오늘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하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과

上水道事業本部長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경기도 포천군 내촌면에 소재하고 있는 쓰레기종합처리 설비 실태파악을 위한 현장시찰 일정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오전 10시까지 시간을 지켜서 위원실로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議事棒 3打)

(19時 18分 散會)

○出席委員

金鍾來 金在實 金鎬一 金寬洙
金判吉 金興植 朴來雨 宋美花
柳辰永 李成浩 車星煥 金基星
李聲九 李松竹

○專門委員

金南中

○出席公務員

上水道事業本部

本部長 朴鍾玉

次長 金弘石

總務部長 金奉鉉

經營管理部長 朴喜秀

給水部長 曹聖鉉

水道技術研究所長 張相愚

.....
(서면답변서)

(뒤에 실음)
.....